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만

제2022-98호 2022년 10월 6일(목) 人



보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118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여수시 고시	」 제2022-416호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고시	1
이 여수시 고시	제2022-41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3
이 여수시 고시	제2022-420호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고시	4
공 고			
여수시 공고	_ 제2022-2674호	도로 지정 공고[호명동 816 외 2필지]	6
여수시 공고	제2022-2685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여수시 공고	제2022-2686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2-2687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
o 여수시 공고	제2022-2691호	화물자동차 운수시업법 위반(불법증차)에 의거 행정처분 독촉고지서 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8
o 여수시 공고	제2022-2692호	화물자동차 운수시업법 위반(불법증차)에 의거 행정처분 독촉고지서 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9
이 여수시 공고	제2022-2693호	화물자동차 운수시업법 위반(불법증차)에 의거 행정처분 독촉고지서 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71
○ 여수시 공고	제2022-2699호	여수시 개도화산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공고	74
이 여수시 공고	제2022-2701호	보상계획 열람공고(남면 미포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	82
이 여수시 공고	제2022-2702호	소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85
이 여수시 공고	제2022-2706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시실 공고(28차)	90
	٦		

기 타

ㅇ 여수시 훈령 제389호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22 - 416호

도로구간(종속구간)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4.

여 수 시 장

- 1. 고 시 일 : 2022년 10월 4일
- 2. 고시방법: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
- 3. 고시내용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 마산로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1부.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1-1-1-1		도로	- L	도로	구간	기초	번호	길이	폭	기초		
관할구역	도로명	유형	구분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 작	기초번호 끝	(m)	(m)	간격 (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마산로	ᆔ	신규	소라면 복산리 680	소라면 복산리 2212-7	173-1	173-20	183	3.3	20	2022.10.4.	1차 종속구간 신규 설정



여수시 고시 제2022 - 41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기간		피 승 인 자				
(승인일)	장소	면적(㎡)	목적	급용'사용 기신	주 소	성 명	고			
2022-54 ('22. 10. 5.)	화정면 월호리 산51번지 일원	1,104								
2022-55 ('22. 10. 5.)	화정면 제도리 73-1번지 일원	1,081	해삼 서식기반	2022. 10. 5.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장				
2022–56 ('22. 10. 5.)	남면 화태리 산1-36번지 일원	1,083	조성을 위한 자연석 투하	2037. 10. 4.	시청로 1 (학동)	(어업생산과)				
2022–57 ('22. 10. 5.)	삼산면 초도리 산1006번지 일원	1,104								

2022. 10. 5.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2 - 420호

도로구간(종속구간)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5.

여 수 시 장

- 1. 고 시 일 : 2022년 10월 5일
- 2. 고시방법 :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
- 3. 고시내용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 마산로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1부.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71-7-01		도로	7 4	도로	구간	기초	번호	길이	폭	기초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 유형	구분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 작	기초번호 끝	(m)	(m)	간격 (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마산로	대	신규	소라면 복산리 680	소라면 복산리 1976-4	182-1	182-18	177	2.3	20	2022.10.5.	1차 종속구간 신규 설정



[여수시 공고 제2022 - 2674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호명동 788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호명동 816, 1751, 813번지

2. 도로면적 : 322m²

3. 도로길이 : 50.98m

4. 도 로 폭 : 6m, 7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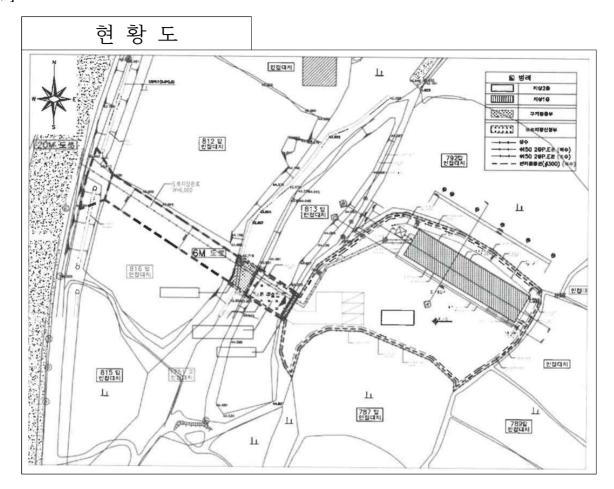
구분	소재지	소케키 키비	지번	기 무	면 2	적(m²)	비고
一十七		시킨	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H <u>1</u> '	
	계			51,044	322		
		816	답	881	209		
	호명동	1751	구거	49,241	44		
		813	답	922	69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2. 10. 4.

여 수 시 장

[별 첨]



여수시 공고 제2022 - 2685호

공 고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일몰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제8조)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감면기한 연장
 (개정 전) 2022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24년 12월 31일
 - 감면대상 및 감면율(종전과 동일)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 재산세 100%
 -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재산세 50%
 -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재산세 50%

- 3. 입법 예고기간 : 2022. 10. 04. ~ 10. 24.(20일간)
- 4.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 번호
-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O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O E-Mail: pcwan@korea.kr
- 전 화: 061-659-3527
- O F A X: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I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그대한 항기를 대칭	찬성	반대	의전(기Ⅱ)	기어 접고기형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	①
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	
람회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여수박람회법 제15조제1항에 따	②
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	
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및 여수박람	
회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_포함한다)의 100분의 5	
0을 경감한다.	

여수시 공고 제2022 - 2686호

공 고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 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문 이동 (제2조->제3조, 제3조->제17조)
- 법령과의 관계(안 제2조)
 - 「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에 따름
-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안 제4조)
-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안 제5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제6조)

-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안 제7조 내지 제8조)
- O 매각재산의 인도(안 제9조)
-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안 제12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안 제13조)
-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안 제14조)
-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안 제15조 내지 제16조)
- 3. 입법 예고기간 : 2022. 10. 04. ~ 10. 24.(20일간)
- 4.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 번호
-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O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O E-Mail: pcwan@korea.kr

O 전 화: 061-659-3527

O F A X: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찬반	여부	ما جا (یا ۵)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반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및 제3조(시행규칙)를 각 각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와 "제17조(시행규칙)"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 ② 1차 심사는 징수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 담당 부서장, 예산 담당 부서장, 회계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 징수 담당 부서장 등 과장급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 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 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 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

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 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 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 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u>신·구조문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 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조(생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신 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다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현 행	개 정 안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신 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징수 담당 부서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신 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 담당 부서장, 예산 담당부서장, 회계 담당부서장, 문화예술 담당부서장, 징수 담당부서장 등과장급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수는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우에는 공개알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

현 행	개 정 안
	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 할 수 있다.
〈신 설〉	월 구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 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 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때로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한다.
〈신 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 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 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 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 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 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 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 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
	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
	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
	수.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
	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
	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
	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 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
	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
	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
	수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
	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

현 행	개 정 안
	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로를 해제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신 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 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 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조 (생 략)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여수시 공고 제2022 - 2687호

공 고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용어 및 별지서식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 등을 신설한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변경(안 제12조~제15조 및 별지 제1호~5호, 제9호~10호)
 - 결손처분 용어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로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보류로 함

O 압류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 서식 신설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안 제18조, 안 별지 제11호 서식)
-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안 제19조, 안 별지 제12호 서식)
- 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안 제20조, 안 별지 제13호 서식)
- 3. 입법 예고기간 : 2022. 10. 04. ~ 10. 24.(20일간)
- 4.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 번호
-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O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O E-Mail: pcwan@korea.kr
- O 전 화: 061-659-3527
- O F A X: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찬반	여부	ما جا (یا ۵)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반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여수시 시행규칙 제 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를 "법 제106조제1항"으로,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 제20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 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 중 "결손"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효완성정리

별지 제1호서식 중 "감액·결손은"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액"을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액"으로 하고 감액 · 결손은"을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를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를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불납결손액"을 "불납정리보류액"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결손처분여부"를 "정리보류여부"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여수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 [별지 제2호 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 [별지 제3호 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수납부
- [별지 제5호 서식] 징수부
- [별지 제9호 서식] 정리보류표(갑), 정리보류표(을), 시효완성정리표(병)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 [별지 제13호 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u> </u>		4		7											
		신고 감인	2납투		결정결 리 _	의사	(
π ι				וה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관		징	수	부 분	틍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납	• 감액 세 고	통 지 지 서	또는 발 부				년	월	일	(인)
팀				장		납 제	액	통	지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년	월 월		(인) (인)
			관			세	입	연	도					년도		세입
	세					결	정 L	ዘ 용		본세	가	산금			계	
	입 과		항			세		액								
	목					가	산	세								
			목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			')		
납	세	,	인	원	٨١		0田	• 면(등	5)			번길	외		명	
											수납 등자					(인)
적				요	년도	월	<u>E</u>	르	세		환급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u>2</u>									
*	감액	• 정	리보	류•/	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	(전산 C	이용 시	"△"	또는 "—"로	로 표시)로	기재				

내 역 서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구분 납액(감액)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액 과세표준 세율 납세인원 읍면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동 ※ 감액·<mark>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mark>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부과·신고납부·감액·<mark>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mark>)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통지 연도 납세 세목 세액 비고 번호 연월일 납기 인원 과장 팀장 담당자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	금출납원	실 귀	하											
아래와	같이 /	세입을	부고	ト・신고납투	· 감액	• 정리	비보류	• 시효완	성정리	결정하였음을	벌	발의일 :	년	월	일
알려드립	립니다.											세입징	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나베이의	납부기한	н⊐
제립연도 	세속	본세	가산금	계	납세인원	업구기안 	비고
		1	1				

■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법인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 <mark>정리보류</mark>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0.7	(210mm(백산지 80g/m²)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계연도: 년도 일의년월: 년도 월분

회계연도 : 결의년월 :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여 가	원 까지	추 경	3	•		수액	불납정	리보류액			징수비율	†	지방	세환급금
구분	<u>d</u> -	목표액	목표액	- 0 목표액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미수액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	계															
년도	합계															
	소 계															
	00세															
	00세															
	총 힙 년도		총 합계 년도 합계 소계	목표액 목표액 총 합계 년도 합계 소계 oo세	목표액 목표액 총 합계 년도 합계 소계 oo세	구분 연간 목표액 월까지 주경 목표액 목표액 목표액 본월분 총 합계 년도 합계 소계 oo세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년도 합계 교육 교육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총 합계 년도 합계 □ □ □ □ □ ৩০세 ○ □ □ □ □ □	구군 원 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게 Image: The properties of the propertie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1<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 경 목표액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총 합계 □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丑				
	결	재		「지반세즈	실수번 . 제1	06조제	1호6세 대	다라 정:	리보류 하고/	다 하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48.46		001	10011	4-1 6.	<u> </u>	η [[-]-].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세납자	성명				실	J년월일	<u> </u>			
과세						세	액	1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본세	본세 가산금			과,	세물건
				<u>.</u>	조사결과		,			
_	7 H		- 11	11.0	T 110	I o l			조사자	
-	구분		조사니	ᅢ픙	조사일	<u> </u>	직	급	성명	서명
주민등	록지 조시	F								
재선	산조사									
허가 및	! 기타사형	ġł.								
			주민등록	지 등 조사를	를 위임하였	을 경우	의 확인	내용		
		조사사	항				조	.사 및 :	확인자	
						사자 인자		담당자) 과 장)	: : : : : : : : : : : : : : : : : : : :	(인) (인) (인) (인)
1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차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삭제)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 [별지 제9호서식**(을)**]

			정	리보류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정리.	보류 하고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연도			납세의무자	세액				
번호	기분	세목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HUALTI 00-/ 2)		

■ [별지 제9호서식**(병)**] 〈신설〉

시호완성정리표												
		재		「지방세징수법」 제1	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	성정리 하고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연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번호	기분	씨득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	세 고액·상습체L	가자 명단공개 심의	I요구서					
심	의요구	번호			심의요구일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	년호					
	주:	소(사업정	당) (연	·연락처 :)							
지방세 체	 납내역	(총 체님			원)		(단위 : 원)				
세목명	-	납투	부기한	본세	체납액 가산금	계	정리보류여부				
체닌	라 요지										
심의청	성구이유	P.									
「지방세증	싱수법」	제11조	5에 따라	년	월 일	하고자 심의를 요구합	합니다.				
전라남 <u></u>	도 지빙	·세심의·	위원회 우	여 [:] 원장 귀하	수 시 장						
※ 붙임	: 증명	서류	부.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호)	성별					
(1) 신청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	소						
제1항에	이 속하는 직전 따른 예술품 등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		연평균	회					
10회 0	상일 것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 1. 신청자격 입증서류
-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 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전 문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성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 각 업 무 소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수 행 능 력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여 수 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변			성별		
세납사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	의 표시								
압류	일			년	월	일			
		압류에 전	관계된 #	체납액					
	71 11 61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계	지능	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여 수 시 장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별지 제14호 서식] <mark>〈신설</mark>〉

(4) 대금 납부일 :

매각재산의 인수증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1) 매수인	주소 (영업소)			
께구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2) 매도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3】

<u>신·구조문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재와 동일)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②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	시효완성정리하고시효완성정리하고
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③ (생략)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제13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	정리보류는 정리보류
<u>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u>	결정결의서 정리
<u>손처분표(갑, 을)</u> 에 따른 <u>다.</u>	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u>〈신 설〉</u>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
	<u>른다.</u>
제14조(지난 회계연도 <u>결손처분</u> 취소시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시 이월액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	정리)
계연도의 <u>결손처분을</u> 취소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	
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	정리보류 취소액과
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	
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 정리보류를-----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 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 12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지방세징수 법 시행령 제91조의11 제5항 및 제6항의 인 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 제2항 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별	지 제1호	서식]					(앞 쪽)	■ [별	지 제1호	서식]				(앞 쪽)
				결정결의서						□ 신□ 감□ 정	·과 고납부 ·액 리보류 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T.	<u>م</u>		발	의		년 월	일 (인)	- T	Д		발	의		년 월 일(인)
징	수 관		징 수 부 등	등 재		년 월	일 (인)	징	수 관		징 수 부 등	등 재		년 월 일(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납 세 고 지 서	또는 발 부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납 세 고 지 서	또는 발 부		년 월 일(인)
팀	장		납 액 통 제	지 호		년 월	일 (인)	팀	장		납 액 통 제	지 호		년 월 일(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년 월	일 (인)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관		세 입 년	도		년도	세입		관		세 입 년	도		년도 세입
세			결 정 내 용	본 세	가산금	7	계	세			결 정 내 용	본 세	가산금	계
입 과	항		세 액					입 과	항		세 액			
목			가 산 세					목			가 산 세			
	목		결 정 액						목		결 정 액			
결 정	세 액	日		원(₩)		결 정	세 액	급		원(₩)
납 세	인 원	٨١	임	• 면(동)	번길	외	명	 납 세	인 원	시	인비	• 면(동)	번길	외 명
					수납부 등재		(인)						수납부 등재	(인)
적	요	년도	월 분	세	환급금 정리		(인)	 적	요	년도	월 분	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	과 같음.							내역 : 이면(별첨)	과 같음.			
※ 감액	• <u>결손은</u>	└ 붉은 글씨(전산 이용	- - 시 "△" 또는 "-" <u>:</u>	 로 표시)로 기재				※ 감액	정리보류	- - 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				210mm×2	297mm(백상 ⁷	지 80g/m²)						210mm×29	97mm(백상지 80g/m²)

(뒤 쪽) 내 역 서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u>결손</u> 결정액 납액(감액) 구분 세율 과세표준 납세인원 읍면동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u>결손은</u>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내 역 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부과 • 신고납부	· • 감액 • <mark>정리보류</mark> 결정액	• 시효완성정리	납세인원	납액(감액	
읍면동			계	본세	가산금		통지번호	
			<mark>성리는</mark> 붉은 글씨(전					

210mm×297mm(백상지 80g/m²)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부과・심	신고 납	부・감	액 ・ <u>결</u>	<u> 손</u>)결정	액 통지부			(년	크과 · 신 .	고납부ㆍ	감액	・정리토	4冊・ノ	니효완성경	정리)결정액	통지	쿠
	결재		통지	통지	연도	세목	세액	납세	비고		결재		통지	통지	연도	세목	세액	납세	비고
사 장	팀장	담당자	번호	연월일	납기	711-7		인원	-1-	과장	팀장	담당자	번호	연월일	납기	711 -	711-1	인원	-ı—

「벽지	제3호	서신]
	게이	\sim \sim \sim

세입(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결정액 통지서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u>결손</u> 결정하였음을 발의일 : 년 월 일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 []

ulolod E	шВ		세액		ı Lıllolol	ı LHələi	шП
세입연도	세목	본세	가산금	계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3호 서식]

세입(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mark>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mark> 결정 발의일 : 년 월 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 []

Moledic	세목		세액		ı kıllolol	i L터기를	шП
세입연도	세속	본세	가산금	계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호 서식]					
		수 	납 부							수 	납 부		
과세물건	과표액 과. 전화번호 주:	기일 세물건지 소 로자금애		수납구분 저당세애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법인명)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보과금액	수납 강애/저리보류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티리아크린포) (티리어)	71 7	F410 ii	<u>11 - 17 2 C</u>	· 6 6 1 1 1	сютые тыпа		(비리 6 국 진 오)	(нёб)	\\\\=\\\\\=\\\\\\\\\\\\\\\\\\\\\\\\\\\	十 月日日		66MH	сотне тно-
					297mm×210mm(백상지	80g/m²)						29	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 :

	급 연		연 간 월까지	ネ カ	조	정액	징 <i>=</i>	수액	불납결	손액		7	장수비율		지방세	환급금
	구분	목표액	목표액	목표액	본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보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 까지 누계	미수액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 까지 누계
총	합계															
	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Ш																

■ [별지 제5호 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 :

	нан
ᄎ ᇵ게	본월분 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이에	
00세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9호 서식	(갑)]							(앞 쪽)	
			결	손 처	분표					
		재		「지비사	세지수번 .	제106조제	1 하제1 중	제2층 및	I 제4층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여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 일			
ᆌ나	주소					상호				
체납자	성명				실	년월일				
과세	od E	71 🖽	1 1-71	ШВ		세액		71.11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본세	가산금	계		물건	
	조사결과									
	7 H		-	0	T. 110			조사자		
	구분		조사내	-	조사임	2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	등록지 조사									
재	산조사									
허가 되	및 기타사항									
		 주민	!등록지 등 <u>:</u>	조사를 위임	' 하였을 경	우 확인나	용	I	1	
		조사사	항		2	도사 및 호	학인자			
							(담당자) (과 장)	: : :	(인) (인) (인)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9호 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재			「지방사	세징수번	제10	6조제·	1호에 [나라 정리보	류 하고자
담당자	팀장	과징	ŀ	국장	합니다.	1016]	* 11 1 0 1	O	1 6 - 11 -	1-1 8-1-1	11 912-4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세납시	성명					실	l년월일	일			
과세	연도	기분	<u>I</u>	납기	세목		세약			 과서	물건
번호 						본세	가신	<u></u>	계		
					조사결	과					
	구분			조사내용	G	조사임	ol.			조사자	
	丁正			꼬시네	o	그가	⊒	즈	il 급	성명	서명
주민등	등록지 조사										
재	산조사										
허가 5	및 기타사항										
		주	민등	록지 등 3	조사를 위임	하였을 경	우 확	인내용	2		
		조사시	나항					조	나 및 회	학인자	
							사자 인자		담당자) 과 장)	: : :	(인) (인) (인)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자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삭제)
-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별지 제9호 서식 (갑)]		(뒤 쪽)	결지 제9호 서식 (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1. =	F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2. 🗷	ポ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3. 9	·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9호 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팀장 국장 담당자 과장 년 월 일 납세의무자 세액 연도 과세 세목 _ 기분 번호 본세 가산금 성명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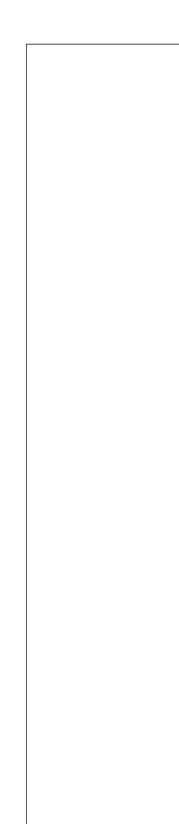
■ [별지 제9호 서식**(을)**]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형	항에 따라 정	 리보류 하 [.]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자 합니다.	· · · 1 00 · · 1 6	3-11 -1-1 0	-12 II 91-
					년 월	일	
과세	연도			┴ 납세의무자		세액	
번호	기분	세목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 [별지 제9	호서식 (병)] 〈	[신설〉					
				시 효	완 성 정 리	丑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 합니다. -			
						년 월	일	
	과세	연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번호	기분	- 4 -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신설)								
(단단)								
							210mm×297mm	(백상지 80g/m²)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	ユ액·상습체납ス	아 명단공개 심	님의요구시	4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지	명단공개 성	닠의요구 시	4
심	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지			심	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지	ī-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u>5</u>)			
체납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u>-</u>		체납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	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주소(사업장) (연르	ţ처 :)	<u>'</u>	
지방세 체	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지방세 체	납내역(총 체납	백 :		원)		(단위 : 원)
세목명	를 납부기호	L L	체납액		결손처분	세목명	d 납부	フレゔレ		체납액		정리보류
세룽	3 日十/12	본세	가산금	계	여부	\\\\\\\\\\\\\\\\\\\\\\\\\\\\\\\\\\\\\\	3 HT	기번	본세	가산금	계	여부
체닡	합요지 					체닡	남요지					
심의창	ġ구이유					심의칭	경구이유					
「지방서	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 년 울 여 수 시	일 일	고자 심의를 요	구합니다.	「지방서	 징수법」 제112	5에 따라 :	위 지방세 체납자9 년 월 여 수 시		·고자 심의를 요·	구합니다.
전라남5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			 전라남 <u>!</u>	도 지방세심의위	원회 위원		- \-/-		
 ※ 붙임	: 증명서류 부.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	7mm(백상지 80g/m²)						210mm×297	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1호	서식]		
		0=	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	청서
	※ 색상이 어두	운 난은 신청인이 작	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1) 신청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	<u></u>
	(2) 신청 자·	격		
(신설)	제1항어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연평균 회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2. 매각대학 「지방세정		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여수시 시세 당합니다.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
				년 월 일
	١١ ٨ ٨	ᄍᅛᅠᆜᅙᆝ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장 귀하		



(신설)

■ [별지 제1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시업자명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전 문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성 (50)	성		20~16	15~11	10~6	5~0				
매 각 업 무 수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수 행 능 력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 서식] 여 수 시 수신 . _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체납자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계 지방세 가산금 (신설) 체납처분비 합계 끝. 여 수 시 장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1) 매수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2) 매도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신	<u> </u>					
(신설)	(4) 대금 납-	부일 :					
	여수시 시	세 징수 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경	성히 인수하였음을 획	·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u>ı</u>		(서명 또	는 인)
	여수시	장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따른 <u>유가보조금 반환 독촉고지서</u>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2. 10. 4.



- 1. 공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19.(16일)
- 2. 독촉고지서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의거, 불법 등록 후 직권 말소 등록기간까지 수급 받은 유가보조금 반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 7**2	대우4.5톤극초장축 카고트럭	(유)지***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0, 2층 207호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5	한국상용4.5톤트럭	(유)지***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0, 2층 207호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및 지급정지에 대해 행정처분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따른 <u>유가보조금 반환 독촉고지서</u>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2. 10. 4.



- 1. 공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19.(16일)
- 2. 독촉고지서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의거, 불법 등록 후 직권 말소 등록기간까지 수급 받은 유가보조금 반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 9**1	한국상용8톤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2	포터 II (PORTER II)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3	트라고액시언트 (TRAGO XCIENT)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4	한국상용 4.5톤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5	동양7.5톤 극플러스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6	트라고(TRAGO)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7	한국상용 4.5톤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8	대우25톤장축 카고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9	트라고액시언트 (TRAGO XCIENT)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0	한국쓰리축 6.5톤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2	한국상용 7.5톤카고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3	현대16톤초장축카고 트럭(터보)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4	한국쓰리축 7.5톤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5	한국상용 7.5톤트럭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6**3	스카니아트랙터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6**1	스카니아트랙터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6**5	현대트랙터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9**4	FH 트랙터	㈜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및 지급정지에 대해 행정처분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따른 <u>유가보조금 반환 독촉고지서</u>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2. 10. 4.



- 1. 공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19.(16일)
- 2. 독촉고지서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의거, 불법 등록 후 직권 말소 등록기간까지 수급 받은 유가보조금 반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 7**0	대우15.5톤 장축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1	한국쓰리축 6.5톤 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3	현대11톤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7	트라고(TRAGO)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8	대우19톤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2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터보)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3	한국상용6.5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4	한국상용7.5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T		
전남80바 7**3	현대슈퍼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5	한국상용8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4**0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4	대우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6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7	FM12 6X2 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8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9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2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3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6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7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0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1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2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3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및 지급정지에 대해 행정처분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개도화산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고

2022년도 여수시 개도화산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할 사무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5.

여 수 시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기간 : 2022. 11. 1. ~ 2022. 12. 31.(2개월)

나. 채용분야 : 사무장(어촌체험휴양마을)

다. 채용인원: 1명(개도화산)

2.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근무(채용)조건

구	분	채용기간	모집인원	급여(활동비)	근무조건
개도화산어촌	체험휴양마을	2개월간 협약체결	1명	월/191만원상당	"

나. 담당업무

- 어촌 특성에 맞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체험활동 안내·지도
-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회계·고객관리 등 체험휴양마을사무
-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거나,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 등
- 마을특산물 판매 등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채용공고일 현재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사무장 주요업무및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 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가능한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어·영농은 겸직 가능
- 성인지 사업으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우선순위 적용

나. 우대사항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근무 경험이 있는자
- 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PC활용 등)
- 업무관련 교육이수자(농•어촌 지역개발, 정보화, 회계관련 교육 등)

다. 기타사항

- (제외자)마을 대표의 직계존속인 자 또는 배우자, 마을대표
- 홈페이지 등 컴퓨터 활용 할 수 없는 자

4.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가. 공고기간 : 2022. 10. 5.(수) ~ 10. 14.(금)

나. 접수기간 : 2022. 10. 5.(수) ~ 10. 14.(금),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해양항만레저과 연안관리팀(☎061-659-3972)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4층, 해양항만레저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작성하고 <u>본인이 제출서류 지참</u>하여 해양항만레저과 연안관리팀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마. 선정방법

- 1) 제1차 : 서류심사
- 2) 제2차('22. 10. 20.) : 면접심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대상자는 개별 유·무선 통지)
- 3)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 시 동점자 발생할 경우
 - 사업참여 경력자, 전공해당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순 선발

-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24.(월)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유선 또는 SMS)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별첨1].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2].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첨3].
- 이력서(3개월 이내 사진첨부)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육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 경력·자격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서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다. 응시자격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연도 중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근로 계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연안관리팀(☎061-659-39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①학력(전공)			
②채용희망마을			
③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④직무수행계획 (요약)			
⑤주요경력			
⑥기타 특이사항			
이사고 가이 201	ood도 서초체허호야마S	으 사무자채요지위사어 지위시처서르	71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2년 10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 ①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행정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 ③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④ 직무수행계획(요약): 사무장 채용 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⑤ 주요경력: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 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⑥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 2]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⑥직무수행계획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어존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2년 10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 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 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 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2. 10. .

성 명

(서 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남면 미포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6.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남면 미포마을 진입로 및 확포장공사

나. 시 행 자 : 여수시장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공사 L=405m

라. 사업기간 : 2021. 12. 9. ~ 2022. 12. 3.(일시정지 중)

- 2. 열람공고기간 : 2022. 10. 6. ~ 10. 22. (16일간)
-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우리 시 섬자원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 게재
-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가.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양식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업자명: 해당사항 없음

토지	당초	편입면적	토지 :	소유자	소유자	전화번호	비고
소재지	지번	(m²)	주 소 성 명		확 인	(자택 또는 휴대폰)	1111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 타

- 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 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061-659-3983,3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미포마을 진입로 및 도로확포장공사 감정평가대상 조서 작성자 : 공무직 정수미 토지소재지 편입(분할후) 소유자 이해관계인 실제 비고 지적 여번 권리의종류 지목 이용 성명또는 면적 소재지 지번 지번 주소 성명 주소 (m2) 상황 명칭 및 내용 (m2) 계 11필지 852 469 남면 도로 박*수 1 994-13 115 115 여수시 남면 심장리 *** 심장리 남면 여수시 남면 심장리 *** 2 994-4 도로 방*조 62 62 심장리 남면 저 방*혁 여수시 남면 미포길 ** 3-1 994-7 294 294*992/6188 심장리 울산 중구 근저당권설 전 방*조 하*래 3-2 294*5196/6188 여수시 남면 심장리 *** 북부순환도 정 남면 1000-5 두루 여수시 남면 심장리 *** 박*우 4 29 29 심장리 남면 저 여수시 남면 심장리 *** 홍*진 5-1 1000-10 64 64*500/715 심장리 여수시 남면 심장리 *** 강*남 5-2 64*215/715 남면 저 여수시 남면 심장리 *** 혼*진 6-1 1000-7 25 25*500/715 심장리 저 여수시 남면 심장리 *** 강*남 6-2 25*215/715 남면 7 994-11 61 61 도로 여수시 남면 심장리 *** 방*조 심장리 울산 중구 근저당권설 남면 995-2 CH 방*조 한★래 여수시 남면 심장리 *** 8 51 51 심장리 북부순환도 정 남면 방*조 도로 여수시 남면 심장리 *** 9 995-1 46 46 심장리 남면 여수시 신월*길**, ***동 대 80 박*호 10 990-1 80 심장리 ***호(신월동,대주아파트) 도로 남면 심장리 *** 배*도 999-2 25 25 11 심장리

소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여 수 시 장

1. 목적

○ 급경사지 사면 토사 유실 및 암석 붕괴 등으로부터 보행자 및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공고내용

- 가.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나. 의견수렴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행정예고 기간: 2022. 10. 06. ~ 2022. 10. 26.(21일간)
- 라. 의견제출 기간: 2022. 10. 06. ~ 2022. 10. 26.(21일간)
- 마. 공고방법: 여수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위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관리기	刊
	Π Λ	유형	등급	현황	1/8/rm	관	고
봉두지구	역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6-2 일원	붕괴위 험지역	D	L=200m H=20m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여수시	

※ 지정구역 토지조서 별첨

4.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대포지구	2022년~2025년	6,800	사면정비 200m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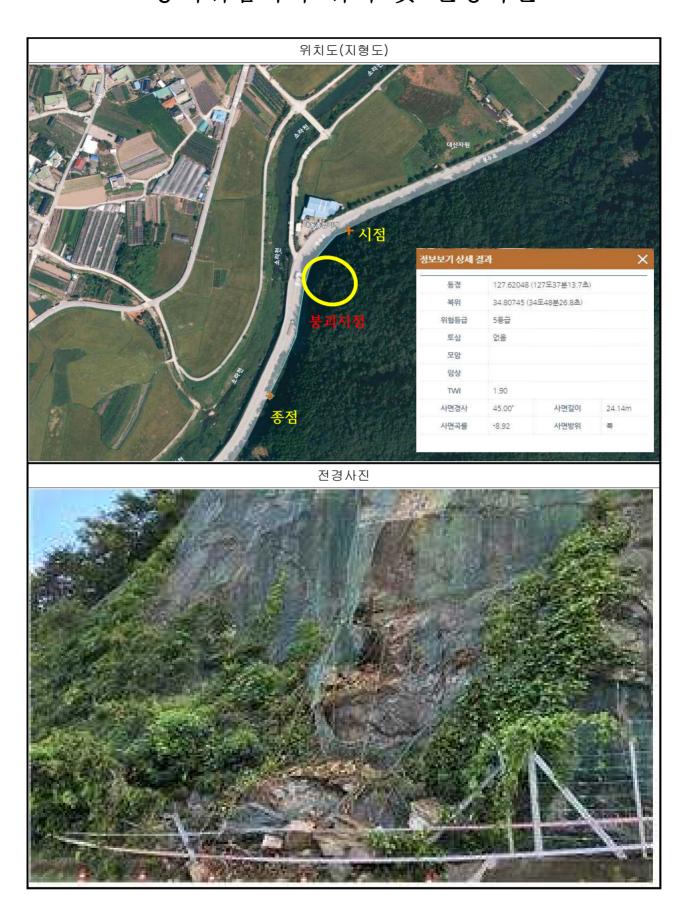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협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 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여수시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2022. 10. 06. ~ 2022. 10. 26.(21일간)
-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1-659-5838) 또는 전자우편(anxovnd@korea.kr)
- 라. 제 출 처: 여수시 시청로 1[여수시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61-659-4043)]
- 마. 기 타: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붕괴위험지역 위치 및 전경사진



소라지구 붕괴위험지구 지정구역 토지조서

번호	주	·소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비고
계	5필	길지			4,830	4,277	
1	여수시	소라면	6-2	산	3,594	3,594	
2	여수시	소라면	6-1	산	642	89	
3	여수시	소라면	6-3	전	124	124	
4	여수시	소라면	5-4	산	173	173	
5	여수시	소라면	5-5	산	297	297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네ㅋ #ㅋ시8	트 되고 극으시시시 미다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의겨제 <i>축</i> -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	법」 제27조제1	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ㅡㅡ 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공 고 문

여수시 공고 제2022-2706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별	첨			별	첨
	부동산의 표시					'	
확인서				별	첨		
발급	취득사유						
신청인				별	첨		
	공고기간						
				별	첨		
						T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대장상							
소유자		별	첨			별	첨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등기						,	
명의인		별	첨			·	첨

위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5일

여 수 시 장

유 의 사 항

-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합 계		2	57건		351필	!지								
1	2828	2022- 08-04	김두옥	1958.4.26.	봉강동	산13	임야	545	증여	2022.10.5. ~ 2022.12.5.	김철귀	-	김철귀	_	
2	2533	2022- 07-01	강윤덕	1969.7.13.	돌산읍 군내리	1423-6	전	641	매매	2022.10.5. ~ 2022.12.5.	박신구	-	박신구	-	
3	2538	2022- 07-01	김병순	1953.11.16.	돌산읍 군내리	184-1	임야	807	상속	2022.10.5. ~ 2022.12.5.	김덕수	-	김덕수	_	
4	2535	2022- 07-01	차길남	1952.12.14.	돌산읍 신복리	155	대	347	증여	2022.10.5. ~ 2022.12.5.	차도근	1922.4.29	차도근	_	
5	2536	2022- 07-01	김병순	1953.11.16.	돌산읍 신복리	789-1	답	2,562 (1/3)	메메	2022.10.5. ~ 2022.12.5.	김병길	-	김병길	_	
6	2537	2022- 07-01	김병순	1953.11.16.	돌산읍 신복리	789-1	답	2,562 (1/3)	매매	2022.10.5. ~ 2022.12.5.	김정현	-	김정현	_	
7	2547	2022- 07-01	윤용진	1971.4.7.	돌산읍 신복리	산239	임야	3,570	매매	2022.10.5. ~ 2022.12.5.	박점룡	-	박점룡	-	
8	2808	2022- 08-04	노승애	1965.10.10.	돌산읍 신복리	598-2	전	229	매매	2022.10.5. ~ 2022.12.5.	전진영	-	-	_	
9	2829	2022- 08-04	정용순	1961.3.20.	돌산읍 신복리	149	대	212	매매	2022.10.5. ~ 2022.12.5.	황종윤	-	-	-	
10	2830	2022-	주정배	1955.6.26.	돌산읍 신복리	154	대	284	사소	2022.10.5.	주덕홍	-	-	_	
10	2030	08-04	구성배 	1900.0.20.	돌산읍 신복리	160-3	대	430	상속	2022.12.5.	주덕홍	-	-	-	
11	2831	2022- 08-04	주정배	1955.6.26.	돌산읍 신복리	203-2	대	241	상속	2022.10.5. ~ 2022.12.5.	신원복곡	-	신원복곡	_	

연	접수	접수	신 청 '	인	부동산 표	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2	2697	2022- 07-27	박기종	1954.7.18.	돌산읍 금성리	236-5	임야	564	상속	2022.10.5. ~ 2022.12.5.	박창신	-	박창신	-	
					돌산읍 금성리	산181-1	임야	12,198			박주인	1903.8.7.	박주인	_	
13	2783	2022-	서맹숙	1956.1.26.	돌산읍 금성리	349-1	전	347	· 상속	2022.10.5.	박주인	1903.8.7.	박주인	-	
13	2103	08-02	1734	1950.1.20.	돌산읍 금성리	351	임야	36	0 7	2022.12.5.	박주인	1903.8.7.	박주인	-	
					돌산읍 금성리	630-1	전	724			박주인	1903.8.7.	박주인	-	
14	2784	2022- 08-02	서맹숙	1956.1.26.	돌산읍 금성리	650	전	4,066 (230 /1230)	상속	2022.10.5. ~ 2022.12.5.	박주인	1903.8.7.	박주인	-	
15	2617	2022- 07-21	이대근	1973.5.1.	돌산읍 율림리	80-1	전	893 (1/2)	상속	2022.10.5. ~ 2022.12.5.	궁본인석	-	궁본인석	-	
16	2618	2022- 07-21	이도근	1971.2.10.	돌산읍 율림리	80-1	전	893 (1/2)	상속	2022.10.5. ~ 2022.12.5.	궁본인석	-	궁본인석	_	
17	2698	2022- 07-27	김평준	1940.2.27.	돌산읍 죽포리	812-1	전	1,211 (469 /869)	매매	2022.10.5. ~ 2022.12.5.	김개동	-	김개동	-	
18	2699	2022- 07-27	오준환	1978.12.7.	돌산읍 죽포리	1255	답	939	매매	2022.10.5. ~ 2022.12.5.	오우길	-	오우길	_	
19	2863	2022- 08-04	서재한	1959.10.10.	돌산읍 죽포리	1540	전	57	매매	2022.10.5. ~ 2022.12.5.	서명렬	1923.7.15	서명렬	-	
20	2864	2022- 08-04	서재한	1959.10.10.	돌산읍 죽포리	1339	대	89	매매	2022.10.5. ~ 2022.12.5.	박채옥	-	박채옥	_	
21	2686	2022-	김점숙	1960.2.28.	돌산읍 금봉리	7	답	225	- 상속	2022.10.5.	김삼배	-	김삼배	-	
21	2000	07-27	70 0 1	1300.2.20.	돌산읍 금봉리	9	전	661	0 7	2022.12.5.	김삼배	-	김삼배	-	

연	접수	저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u>)</u>	
번	번호	접수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22	2776	2022- 08-02	하정이	1950.7.19.	돌산읍 금봉리	72	답	919	상속	2022.10.5. ~ 2022.12.5.	옥득룡	-	옥득룡	_	
23	2785	2022- 08-02	이성규	1946.11.28.	돌산읍 금봉리	881-1	도로	13	· 상속	2022.10.5.	이두실	1902.10.15.	이두실	_	
23	2700	08-02	^भ ′४ म	1940.11.20.	돌산읍 금봉리	산300-4	도로	170	/ 강국	2022.12.5.	이두실	1902.10.15.	이두실	_	
24	2809	2022- 08-04	김병태	1937.12.25.	돌산읍 금봉리	산81-1	임야	2,380	매매	2022.10.5. ~ 2022.12.5.	김인식	-	김인식	_	
25	2542	2022- 07-01	조비상	1942.2.25.	돌산읍 둔전리	670-7	전	32	매매	2022.10.5. ~ 2022.12.5.	오연수	-	오연수	_	
26	2543	2022- 07-01	조영호	1949.9.13.	돌산읍 둔전리	670-5	전	26	매매	2022.10.5. ~ 2022.12.5.	오연수	-	오연수	_	
27	2659	2022- 07-27	박학천	1940.9.29.	돌산읍 둔전리	1435	답	1,005	매매	2022.10.5. ~ 2022.12.5.	박학래 박영래 박경남	1938.10.7 1901.12.15 1938.8.16	박학래 박영래 박경남	-	
28	2867	2022- 08-04	김두정	1955.9.5.	돌산읍 둔전리	산49	임야	793	증여	2022.10.5. ~ 2022.12.5.	김조학	-	-	-	
29	2560	2022- 07-12	김소림	1941.3.7.	돌산읍 평사리	982-7	답	261	상속	2022.10.5. ~ 2022.12.5.	성산동석	-	성산동석	-	
30	2534	2022- 07-01	김성익	1963.3.19.	돌산읍 우두리	산215	임야	595	상속	2022.10.5. ~ 2022.12.5.	김서용	-	_	_	
					돌산읍 우두리	산88	임야	496		2022.10.5.	김성운	-	_	-	
31	2627	2022- 07-21	김철웅	1988.9.2.	돌산읍 우두리	산207	임야	397	상속	2022.10.5. ~ 2022.12.5.	김성운	-	-	-	
					돌산읍 우두리	산274	임야	397		2022.12.0.	김성운	-	-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32	2904	2022- 08-04	주세일	1952.2.11.	율촌면 조화리	72-4	도로	83	증여	2022.10.5. ~ 2022.12.5.	주형철	1927.2.5.	주형철	-	
33	2801	2022- 08-04	주명수	1949.3.14.	율촌면 월산리	1426-2	답	1,157 (1/5)	매매	2022.10.5. ~ 2022.12.5.	정용원	-	정용원	-	
34	2821	2022- 08-04	주재행	1961.5.2.	율촌면 월산리	산190-1	임야	1,339	증여	2022.10.5. ~ 2022.12.5.	주영춘	1902.6.21	주영춘	-	
35	2695	2022- 07-27	위공복	1954.7.11.	율촌면 산수리	1150	대	13	증여	2022.10.5. ~ 2022.12.5.	위경량	-	-	_	
36	2696	2022- 07-27	위공복	1954.7.11.	율촌면 산수리	1174-1	도로	66	상속	2022.10.5. ~ 2022.12.5.	위찬중	1916.4.12	위찬중	-	
37	2721	2022- 07-30	위강복	1963.3.18.	율촌면 산수리	350-3	임야	1,517	상속	2022.10.5. ~ 2022.12.5.	대산찬구	-	대산찬구	_	
38	2778	2022- 08-02	최영철	1952.12.26.	율촌면 산수리	258-1	답	1,131 (1/2)	상속	2022.10.5. ~ 2022.12.5.	최학림	1909.4.8	최학림	-	
					율촌면 가장리	1304	전	157.8		2022 10 5	양문중	269112 -3636018	양문중	_	
39	2793	2022- 08-04	양태승	1955.9.7.	율촌면 가장리	1308	전	263.4	증여	2022.10.5. ~ 2022.12.5.	양문중	269112 -3636018	양문중	_	
					율촌면 가장리	1298	전	511		2022.12.0.	양문중	269112 -3636018	양문중	-	
40	2795	2022- 08-04	류찬길	1976.12.20.	율촌면 가장리	1985-5	답	1,488	매매	2022.10.5. ~ 2022.12.5.	주영춘	-	주영춘	-	
41	2796	2022- 08-04	제주앙씨 강춘공파 종친회	269112 -3637165	율촌면 가장리	1309	대	874.7	증여	2022.10.5. ~ 2022.12.5.	양문중	-	양문중	_	
42	2797	2022- 08-04	제주 앙씨	269112 -3637165	율촌면 가장리	산104	임야	13,785	증여	2022.10.5. ~ 2022.12.5.	양본창랑	-	양본창랑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인	부동산 표	시			.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인	<u> </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43	2798	2022- 08-04	제주 앙 씨 강춘공파 중친회	269112 -3637165	율촌면 가장리	1306	대	222.8	증여	2022.10.5. ~ 2022.12.5.	양장춘	-	양장춘	-	
44	2799	2022- 08-04	제주 앙 씨 장춘공파 종천회	269112 -3637165	율촌면 가장리	1299	임야	1,521	증여	2022.10.5. ~ 2022.12.5.	양장춘 양창랑	-	양장춘 양창랑	-	
45	2818	2022- 08-04	서동석	1963.4.28.	율촌면 가장리	산95	임야	11,702 (1/4)	매매	2022.10.5. ~ 2022.12.5.	대성수	-	대성수	_	
46	2819	2022- 08-04	서동석	1963.4.28.	율촌면 가장리	산95	임야	11,702 (1/4)	매매	2022.10.5. ~ 2022.12.5.	서전병홍	-	서전병홍	_	
47	2782	2022- 08-02	조계양	1977.8.10.	율촌면 봉전리	830	전	595	상속	2022.10.5. ~ 2022.12.5.	조점권	-	_	_	
			강양희 (1/6)	1948.7.29.											
			강형원 (1/6)	1958.5.20.											
48	2803	2022-	강정근 (1/6)	1950.1.17.	율촌면 봉전리	520	답	691	증여	2022.10.5.	강문중	_	강문중	_	
40	2003	08-04	강우희 (1/6)	1970.12.25.	봉전리	320	H	031	0 9	2022.12.5.	70年6		70年6		
			강원희 (1/6)	1946.2.26.											
			강은형 (1/6)	1959.4.26.											
49	2811	2022- 08-04	강덕형	1958.7.12.	율촌면 봉전리	156	도로	136	매매	2022.10.5. ~ 2022.12.5.	오복언	-	_	_	
50	2931	2022- 08-04	김재남	1958.1.24.	율촌면 취적리	777	답	231	증여	2022.10.5. ~ 2022.12.5.	김진홍	-	-	_	
51	2932	2022- 08-04	김재남	1958.1.24.	율촌면 취적리	산273	임야	10,413	증여	2022.10.5. ~ 2022.12.5.	김홍배	-	_	-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인	1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52	2740	2022- 07-30	오동훈	1958.9.12.	율촌면 신풍리	750-3	답	73	매매	2022.10.5. ~ 2022.12.5.	신귀남	1914.10.21	신귀남	_	
53	2777	2022- 08-02	최영규	1948.11.15.	율촌면 신풍리	384-2	답	1,248 (236 /765)	상속	2022.10.5. ~ 2022.12.5.	최홍복	-	최홍복	_	
54	2738	2022- 07-30	유형삼	1970.9.29.	율촌면 상봉리	452	전	493	상속	2022.10.5. ~ 2022.12.5.	옥천영문	1901.9.15	옥천영문	_	
55	2794	2022- 08-04	백형수 (1/2) 백형종 (1/2)	1940.2.26. 1943.1.25.	율촌면 상봉리	산44-2	임야	1,933	증여	2022.10.5. ~ 2022.12.5.	백영인	1921.7.17	백영인	-	
56	2800	2022- 08-04	제주 양 씨 경흥공화 문중	269112 -3636026	율촌면 상봉리	204-1	도로	61	메메	2022.10.5. ~ 2022.12.5.	양동주외 3	-	양동주외 3	_	
57	2804	2022- 08-04	진주강씨 봉전정렬 피문중	118111-36 36111	율촌면 상봉리	산34	임야	13,686	증여	2022.10.5. ~ 2022.12.5.	강동희외2	-	강동희외2	_	
58	2610	2022- 07-14	최정남	1962.3.10.	화양면 나진리	산285	임야	2,083	상속	2022.10.5. ~ 2022.12.5.	최필신	-	-	_	
59	2715	2022- 07-30	서성현	1983.1.8.	화양면 나진리	546	답	638	상속	2022.10.5. ~ 2022.12.5.	백점례	1915.1.20	백점례	_	
60	2716	2022- 07-30	강주희	1982.3.25.	화양면 나진리	163	답	1,030	상속	2022.10.5. ~ 2022.12.5.	강우순	1923.9.28	강우순	_	
61	2930	2022-	이기동	1956.8.13.	화양면 나진리	산279-3	임야	694	상속	2022.10.5.	산촌창희	-	산촌창희	_	
01	2330	08-04	~1/1-0	1300.0.13.	화양면 나진리	28-1	전	651	о П	2022.12.5.	산촌창희	-	산촌창희	_	
62	2613	2022- 07-14	김일웅	1941.2.3.	화양면 용주리	1513-3	도로	125	상속	2022.10.5. ~ 2022.12.5.	김재익	1917.8.10	김재익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A			최드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취득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63	2650	2022- 07-21	박상천	1971.10.19.	화양면 용주리	600	대	142	상속	2022.10.5. ~ 2022.12.5.	목촌시웅	-	목촌시웅	-	
64	2651	2022- 07-21	박상천	1971.10.19.	화양면 용주리	703-1	대	152	상속	2022.10.5. ~ 2022.12.5.	설오엽	1907.11.9	설오엽	-	
65	2663	2022- 07-27	박상환	1959.7.26.	화양면 용주리	567	전	250	매매	2022.10.5. ~ 2022.12.5.	정홍기	-	-	_	
66	2667	2022- 07-27	차형남	1960.9.21.	화양면 용주리	744	전	222	매매	2022.10.5. ~ 2022.12.5.	김경집	-	-	-	
67	2674	2022- 07-27	김두옥	1958.4.26.	화양면 용주리	1434-1	도로	142	증여	2022.10.5. ~ 2022.12.5.	김택철	-	김택철	-	
68	2622	2022- 07-21	박영천	1963.6.27.	화양면 이천리	118	전	436	상속	2022.10.5. ~ 2022.12.5.	정달금	1900.3.12	정달금	-	
69	2714	2022- 07-30	이순하	1953.10.9.	화양면 이천리	630-5	임야	697.9	상속	2022.10.5. ~ 2022.12.5.	이창모	1897.3.29	이창모	-	
70	2920	2022- 08-04	문을식	1960.2.8.	화양면 이천리	454	전	184.5	매매	2022.10.5. ~ 2022.12.5.	문정학	1892.1.2.	문정학	-	
71	2710	2022- 07-30	김동원	1933.1.20.	화양면 옥적리	산172	임야	1,983	매매	2022.10.5. ~ 2022.12.5.	목산가장	-	목산가장	-	
72	2722	2022- 07-30	박건구	1990.1.18.	화양면 옥적리	산241-1	임야	16,661	상속	2022.10.5. ~ 2022.12.5.	박덕준	-	-	-	
73	2723	2022-	박건구	1990.1.18.	화양면 옥적리	1071-1	도로	7	상속	2022.10.5.	박덕준	-	박덕준	_	
13	2123	07-30	[역신기 [*]	1330.1.10.	화양면 옥적리	436-1	전	1,498	0 7	2022.12.5.	박덕준	-	박덕준	_	

연	접수	접수	신 청 '	인	부동산 표	EA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u></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화양면 옥적리	1087	전	654			박병석	1938.6.20	박병석	-	
					화양면 옥적리	584-4	도로	85		2000 10 5	박병석	1938.6.20	박병석	-	
74	2724	2022- 07-30	박건구	1990.1.18.	화양면 옥적리	584-2	전	1,485	상속	2022.10.5. ~ 2022.12.5.	박병석	1938.6.20	박병석	-	
					화양면 옥적리	540	전	717		2022.12.3.	박병석	1938.6.20	박병석	-	
					화양면 옥적리	1025	전	694			박병석	1938.6.20	박병석	_	
75	2725	2022-	박건구	1990.1.18.	화양면 옥적리	585-1	도로	11	- 매매	2022.10.5.	박원래	1896.10.6	박원래	_	
13	2123	07-30	박신T 	1990.1.10.	화양면 옥적리	437	전	136	1	2022.12.5.	박원래	1896.10.6	박원래	_	
76	2726	2022- 07-30	박건구	1990.1.18.	화양면 옥적리	1067-1	도로	6	매 매	2022.10.5. ~ 2022.12.5.	박봉기	-	-	_	
77	2780	2022- 08-02	김동원	1933.1.20.	화양면 옥적리	산171	임야	298	상속	2022.10.5. ~ 2022.12.5.	김한용	-	-	-	
78	2817	2022- 08-04	최명숙	1968.7.21.	화양면 옥적리	1736-12	전	863	매매	2022.10.5. ~ 2022.12.5.	최태옥	-	최태옥	-	
79	2912	2022- 08-04	이승진	1982.1.15.	화양면 옥적리	1789	전	1,104	· 상속	2022.10.5.	이동선	1920.12.28.	이동선	-	
19	2912	08-04	이중신	1902.1.15.	화양면 옥적리	1719	전	188	· 경국	2022.12.5.	이동선	1920.12.28.	이동선	_	
80	2913	2022- 08-04	박종성	1979.1.10.	화양면 옥적리	659-1	잡종지	112	상속	2022.10.5. ~ 2022.12.5.	박병모	-	박병모	_	
81	2914	2022- 08-04	박승훈	1968.3.3.	화양면 옥적리	산233-1	임야	1,388	상속	2022.10.5. ~ 2022.12.5.	박영래	-	박영래	_	
82	2915	2022- 08-04	김인철	1962.12.9.	화양면 옥적리	1697	대	448	증여	2022.10.5. ~ 2022.12.5.	김성홍	-	-	_	

연	접수	접수	신 청 '	રો	부동산 표	시			.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화양면 옥적리	산451-3	임야	298		0000 10 5	김봉수	-	김봉수	-	
83	2916	2022- 08-04	김인철	1962.12.9.	화양면 옥적리	산451-6	임야	397	증여	2022.10.5. ~ 2022.12.5.	김봉수	-	김봉수	_	
					화양면 옥적리	산451-8	임야	99		2022.12.3.	김봉수	_	김봉수	_	
84	2928	2022- 08-04	서학수	1967.8.9.	화양면 옥적리	2086-1	ਪੋਧ	897.6 (1/5)	메메	2022.10.5. ~ 2022.12.5.	서복래	-	서복래	_	
					화양면 화동리	1734	답	787			한채우	_	한채우	-	
					화양면 화동리	1737-1	전	1,038		0000 10 5	한채우	-	한채우	_	
85	2629	2022- 07-21	한옥미	1971.1.2.	화양면 화동리	1737-3	구거	222	상속	2022.10.5. ~ 2022.12.5.	한채우	-	한채우	_	
					화양면 화동리	1737-4	전	50		2022.12.3.	한채우	_	한채우	_	
					화양면 화동리	산202-3	임야	694			한채우	-	한채우	_	
86	2673	2022- 07-27	정인선	1952.8.20.	화양면 화동리	산153	임야	6,149	증여	2022.10.5. ~ 2022.12.5.	정문장	-	-	-	
87	2685	2022- 07-27	박철희	1976.9.23.	화양면 화동리	1091	전	582	상속	2022.10.5. ~ 2022.12.5.	박정근	-	-	-	
88	2597	2022-	મો] ગો ગો	1966.5.15.	화양면 서촌리	1209-1	도로	284	상속	2022.10.5.	배두환	1924.9.10	배두환	-	
00	2591	07-14	배길진	1900.5.15.	화양면 서촌리	1209	전	321	78寸	2022.12.5.	배두환	1924.9.10	배두환	_	
89	2615	2022- 07-14	박상태	1950.11.18.	화양면 서촌리	1318-1	전	1,795	메메	2022.10.5. ~ 2022.12.5.	박한귀	1949.8.6	박한귀	-	
90	2616	2022- 07-15	배길진	1966.5.15.	화양면 서촌리	1343	전	1,223	상속	2022.10.5. ~ 2022.12.5.	배두환	1924.9.10	배두환	-	

연	접수	저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시			최드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u></u>	
번	번호	접수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취득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91	2649	2022- 07-21	박상태	1950.11.18.	화양면 서촌리	1233	임야	312	상속	2022.10.5. ~ 2022.12.5.	박윤길	-	-	_	
92	2652	2022- 07-21	김기섭	1953.9.19.	화양면 서촌리	465	전	292 (1/3)	상속	2022.10.5. ~ 2022.12.5.	김영옥	1911.12.10	김영옥	_	
93	2711	2022- 07-30	이용근	1940.3.20.	화양면 서촌리	1215-1	전	744	상속	2022.10.5. ~ 2022.12.5.	이보규	1888.8.30	_	_	
94	2712	2022- 07-30	이용근	1940.3.20.	화양면 서촌리	1292	전	56	상속	2022.10.5. ~ 2022.12.5.	이보규	1888.8.30	이보규	_	
95	2882	2022- 08-04	오점순	1937.6.17.	화양면 서촌리	1161	묘지	106	매매	2022.10.5. ~ 2022.12.5.	오재열	-	_	-	
96	2555	2022- 07-01	이강순	1962.3.5.	화양면 이목리	1173-1	임야	916	매매	2022.10.5. ~ 2022.12.5.	이목리	-	이목리	_	
97	2779	2022- 08-02	박종규	1963.4.9.	화양면 이목리	1160-2	전	717	상속	2022.10.5. ~ 2022.12.5.	오석삼	1917.10.30	오석삼	_	
98	2845	2022- 08-04	김형주	1964.9.6.	화양면 이목리	산173	임야	1,585	증여	2022.10.5. ~ 2022.12.5.	김성조	-	_	_	
					화양면 이목리	77	답	52		0000 10 5	박만근	_	박만근	_	
99	2895	2022- 08-04	유두진	1941.12.14.	화양면 이목리	77-2	답	132	매매	2022.10.5. ~ 2022.12.5.	박만근	-	박만근	_	
					화양면 이목리	77-1	도로	163		2022.12.3.	박만근	-	박만근	_	
100	2929	2022- 08-04	이기동	1956.8.13.	화양면 이목리	148	답	1,038	상속	2022.10.5.	이창희	-	이창희	-	
100	\	08-04	7/15	1900.0.15.	화양면 이목리	148-2	답	235	78年	2022.12.5.	이창희	-	이창희	-	
101	2611	2022- 07-14	강천호	1940.2.17.	화양면 안포리	358-4	도로	299	상속	2022.10.5. ~ 2022.12.5.	강계진	1895.3.3	강계진	-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인	1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02	2628	2022- 07-21	박원태	1952.7.15.	화양면 안포리	산199	임야	11,802	증여	2022.10.5. ~ 2022.12.5.	박길수	1926.8.30	박길수	-	
103	2662	2022- 07-27	정옥두	1959.7.9.	화양면 안포리	1380	묘지	331	증여	2022.10.5. ~ 2022.12.5.	정문장	-	ı	_	
104	2790	2022-	추성	1962.12.10.	화양면 안포리	1223-3	전	1,835	상속	2022.10.5.	신필모	-	신필모	_	
104	2190	08-02	干 ′8	1902.12.10.	화양면 안포리	1223-4	전	367	70 4	2022.12.5.	신필모	-	신필모	-	
					화양면 안포리	145	묘지	162		0000 10 5	김봉열	-	김봉열	-	
105	2813	2022- 08-04	김갑성	1947.5.20.	화양면 안포리	428	전	2,763	증여	2022.10.5. ~ 2022.12.5.	김봉열	-	김봉열	-	
					화양면 안포리	448	대	176		2022.12.3.	김봉열	-	김봉열	-	
106	2816	2022- 08-04	박연자	1956.3.1.	화양면 안포리	1669	전	185	매매	2022.10.5. ~ 2022.12.5.	김영택	-	-	-	
			이동주 (1/3)	1949.8.15.						0000 10 5					
107	2839	2022- 08-04	이용주 (1/3)	1952.1.19.	화양면 안포리	1405-6	임야	760	상속	2022.10.5. ~ 2022.12.5.	이종수	-	이종수	_	
			이영주 (1/3)	1963.1.26.						2022.12.3.					
			이동주 (1/3)	1949.8.15.	화양면 안포리	699-1	전	1,196		2022 10 5	송본종수	-	송본종수	_	
108	2840	2022- 08-04	이용주 (1/3)	1952.1.19.					상속	2022.10.5. ~ 2022.12.5.					
			이영주 (1/3)	1963.1.26.	화양면 안포리	1195-2	전	5,078		2022.12.3.	송본종수	-	송본종수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인	부동산 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남면 우학리	산131-1	임야	7,318 (1/2)			김공수	1922.6.10	김공수	-	
109	2837	2022-	기처치	1965.9.23.	남면 우학리	산131-7	임야	2,403 (1/2)	증여	2022.10.5.	김공수	1922.6.10	김공수	-	
109	2837	08-04	김형철	1905.9.23.	남면 우학리	산131-9	임야	1,209 (1/2)	등역	2022.12.5.	김공수	1922.6.10	김공수	-	
					남면 우학리	산131-1 5	임야	450 (1/2)			김공수	1922.6.10	김공수	-	
110	2838	2022- 08-04	김형철	1965.9.23.	남면 우학리	534-2	전	347	증여	2022.10.5. ~ 2022.12.5.	김공수	1922.6.10	김공수	-	
111	2870	2022- 08-04	김경운	1973.2.5.	남면 우학리	산162	임야	2,975	상속	2022.10.5. ~ 2022.12.5.	김주일	1920.9.30.	김주일	_	
112	2871	2022- 08-04	김경운	1973.2.5.	남면 우학리	1209	전	1,507	매매	2022.10.5. ~ 2022.12.5.	최성기	-	최성기	-	
113	2872	2022- 08-04	김경운	1973.2.5.	남면 우학리	산154-1	임야	298	매매	2022.10.5. ~ 2022.12.5.	김경조	-	-	_	
114	2878	2022- 08-04	명노성	1948.7.22.	남면 우학리	산217	임야	2,083	상속	2022.10.5. ~ 2022.12.5.	명동석	1917.7.20.	명동석	_	
					남면 우학리	271-2	전	1,709 (1/3)			명동석	1917.7.20.	명동석	-	
					남면 우학리	273	답	1,960 (1/3)		2022 10 5	명동석	1917.7.20.	명동석	-	
115	2879	2022- 08-04	명노성	1948.7.22.	남면 우학리	278	대	618 (1/3)	상속	2022.10.5. ~ 2022.12.5.	명동석	1917.7.20.	명동석	_	
					남면 우학리	279	대	274 (1/3)		2022.12.0.	명동석	1917.7.20.	명동석	-	
					남면 우학리	311	전	4,261 (1/3)			명동석	1917.7.20.	명동석	_	

연	접수	접수	신 청 '	인	부동산 표	E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취득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16	2881	2022-	방창효	1970.2.11.	남면 우학리	1057-1	전	1,590	상속	2022.10.5.	방성수	-	-	_	
110	2001	08-04	2,9 2	1970.2.11.	남면 우학리	산171	임야	6,545	70 9	2022.12.5.	방성수	-	-	_	
					남면 심장리	944	답	314		2022 10 5	장학진	-	-	_	
117	2860	2022- 08-04	장송일	1945.9.14.	남면 심장리	산56	임야	3,174	상속	2022.10.5. ~ 2022.12.5.	장학진	-	_	_	
					남면 심장리	937	전	602		2022.12.0.	장학진	_	_	_	
118	2880	2022- 08-04	장홍만	1949.8.30.	남면 심장리	943	대	453	증여	2022.10.5. ~ 2022.12.5.	장학진	1900.2.5.	장학진	_	
119	2935	2022- 08-04	신철호	1972.12.24.	남면 심장리	495-1	전	1,660	매매	2022.10.5. ~ 2022.12.5.	김상수	1922.8.23.	김상수	-	
120	2573	2022- 07-12	박영배	1971.1.9.	남면 두모리	1306	전	284	매매	2022.10.5. ~ 2022.12.5.	박기홍	-	박기홍	-	
121	2574	2022- 07-12	박영배	1971.1.9.	남면 두모리	1136	전	2,423	매매	2022.10.5. ~ 2022.12.5.	박기일	-	박기일	-	

연	접수	접수	신 청 인		부동산 표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유자		등기명의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남면 두모리	산144-4	유지	555			박병용	-	박병용	_		
					남면 두모리	821-4	유지	320			박병용	-	박병용	_		
					남면 두모리	821-8	도로	349			박병용	-	박병용	-		
122	2607	2022-	비용이	1964.1.10.	남면 두모리	821-9	임야	711		2022.10.5.	박병용	-	박병용	-		
122	2007	07-14	박종원		남면 두모리	824-1	유지	47	상속	2022.12.5.	박병용	-	박병용	_		
				남면 두모리	994	답	83 (1/3)			박병용	-	박병용	_			
					남면 두모리	1003-1	유지	355			박병용	-	박병용	_		
					남면 두모리	1004-1	유지	314			박병용	용 - 박병	박병용	_		
123	2841	2022-	김규태	1072 10 22	남면 두모리	1195	전	2,106	상속	2022.10.5.	이여옥	-	-	_		
123	2041	08-04	石TH	1972.10.23.	1972.10.23.	남면 두모리	1196	전	605	· 경국	2022.12.5.	이여옥	-	-	_	
124	2842	2022-	김규태	1972.10.23.	남면 두모리	1167	전	2,476	상속	2022.10.5.	이여옥	_	-	_		
124	2042	08-04	심ㅠ데 	1972.10.23.	2.10.23. 남면 두모리 1168 대 281 ^{상독} 2022.12.5.	이여옥	_	-	_							
125	2897	2022- 08-04	이애순	1953.3.8.	남면 두모리	산205-4	임야	198	매매	2022.10.5. ~ 2022.12.5.	손종문	1911.4.24.	손종문	-		
126	2898	2022- 08-04	이애순	1953.3.8.	남면 두모리	1082-6	답	337	매매	2022.10.5. ~ 2022.12.5.	손봉오	-	손봉오	-		
127	2899	2022- 08-04	이애순	1953.3.8.	남면 두모리	1085-2	답	271	매매	2022.10.5. ~ 2022.12.5.	손운구	-	손운구	_		

연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l 청 인		부동산 표시				공고	대장상소유자		등기명의인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취득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28	2865		나효영 (1/2) 나유나 (1/2)	1954.1.26. 1963.1.29.	남면 유송리	산251-2	임야	6,435	상속	2022.10.5. ~ 2022.12.5.	나여조	_	_	-	
		2022-			남면 유송리	808	임야	1,689		2022.10.5.	김영옥	1911.12.10.	김영옥	_	
129	2869	2022- 08-04	김기섭 1953	1953.9.17.	남면 유송리	809	전	1,907	상속	~ 2022.12.5.	김영옥	1911.12.10.	김영옥	_	
130	2908	2022-	마영엽	1936.1.28.	남면 유송리	114-1	전	288	· 상속	2022.10.5.	김전귀두	-	김전귀두 -	-	
130	2300	08-04	-гон	1930.1.20.	남면 유송리	114	대	165	0 7	2022.12.5.	김전귀두	-	김전귀두	_	
131	2909	2022- 08-04	마영엽	1936.1.28.	남면 유송리	89	전	883	상속	2022.10.5. ~ 2022.12.5.	김인귀두	-	김인귀두	_	
132	2910	2022- 08-04	주진홍	1972.6.20.	남면 유송리	산272	임야	31,339	상속	2022.10.5. ~ 2022.12.5.	주순익	-	_	-	
133	2911	2022- 08-04	주진홍	1972.6.20.	남면 유송리	산271-1	임야	12,694	매매	2022.10.5. ~ 2022.12.5.	윤봉학	-	-	-	
134	2936	2022- 08-04	김계수	1957.5.13.	남면 유송리	819	전	337	매매	2022.10.5. ~ 2022.12.5.	임일행	1920.12.13.	임일행	-	
135	2940	2022- 08-04	주진홍	1972.6.20.	남면 유송리	산274	임야	11,027	상속	2022.10.5. ~ 2022.12.5.	주순익	-	주순익	-	
136	2787	2022- 08-02	김정식	1954.2.20.	남면 안도리	1217	전	106	상속	2022.10.5. ~ 2022.12.5.	김정리시	-	김정리시	-	
137	2858	2022- 08-04	이계수 (1/3) 김기호 (1/3) 김명호 (1/3)	1954.5.17. 1958.7.5. 1980.11.4.	남면 안도리	776-1	전	78	메메	2022.10.5. ~ 2022.12.5.	장소망조	-	장소망조	-	

여	연 접수		신 청 인		부동산 표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유자		등기명의인			
번	번호	접수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38	2859	2022- 08-04	이계수	1954.5.17.	남면 안도리	777	전	1,990	중여	2022.10.5. ~ 2022.12.5.	이부암	-	이부암	-		
139	2862	2022- 08-04	김종연	1962.6.15.	남면 안도리	892	대	119	상속	2022.10.5. ~ 2022.12.5.	문대아	1915.1.22	문대아	-		
140	2364	2022- 05-24	김본준	1948.12.15.	남면 연도리	1486	답	420	상속	2022.10.5. ~ 2022.12.5.	김인동	-	김인동	-		
141	2428	2022- 06-12	김본준	1948.12.15.	남면 연도리	1487	답	92	매매	2022.10.5. ~ 2022.12.5.	김양길	-	김양길	-		
					남면 연도리	908	전	1,269		2022 12 5	김종임	1920.8.13	김종임	-		
142	2513	2022- 06-23	김태익	1991.12.7.	1991.12.7.	남면 연도리	1217	전	2,278	상속	2022.10.5. ~ 2022.12.5.	김종임	1920.8.13	김종임	-	
					남면 연도리	836	전	1,273		2022.12.3.	김종임	1920.8.13	김종임	-		
143	2514	2022- 06-23	배신자	1941.3.10.	남면 연도리	1242	전	560	매매	2022.10.5. ~ 2022.12.5.	배순홍	-	배순홍	-		
144	2515	2022- 06-23	이창웅	1940.8.23.	남면 연도리	997	전	212	상속	2022.10.5. ~ 2022.12.5.	이본안돌	-	이본안돌	-		
145	2516	2022- 06-23	이창웅	1940.8.23.	남면 연도리	산21	임야	1,190	상속	2022.10.5. ~ 2022.12.5.	이안돌	-	이안돌	-		
					남면 연도리	434	대	320			문성남	1936.5.16	문성남	-		
146	2517	2022-	김사치	1945.7.15.	1045 7 15	남면 연도리	469-1	대	331	1	2022.10.5.	문성남	1936.5.16	문성남	_	
140	2517	06-23			남면 연도리	673	전	946	상속	~ 2022.12.5.	문성남	1936.5.16	문성남	_		
							남면 연도리	1344	전	1,746			문성남	1936.5.16	문성남	-

연	연 접수 2		신 청 인		부동산 표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유자		등기명의인			
번	번호	접수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47	2518	2022- 06-23	이무웅	1940.6.22.	남면 연도리	1508	답	86	매매	2022.10.5. ~ 2022.12.5.	김채문	1912.1.15	김채문	-		
148	2519	2022- 06-23	이무웅	1940.6.22.	남면 연도리	1509	답	155	매매	2022.10.5. ~ 2022.12.5.	박봉혁	1937.12.8	박봉혁	-		
140	0000	2022-	시미원	1005 10 14	남면 연도리	산134	임야	11,008)] <u> </u>	2022.10.5.	이성조	-	이성조	_		
149	2603	2022- 07-14	이대현	1965.10.14.	남면 연도리	산156	임야	6,744	상속	2022.12.5.	이성조	-	이성조			
					남면 연도리	산153-8	임야	595		2022 10 5	구양옥	-	구양옥	-		
150	2604	2022- 07-14	구현철	1962.1.1.	1962.1.1.	남면 연도리	산153-6	임야	694	증여	2022.10.5. ~ 2022.12.5.	구양옥	-	구양옥	-	
					남면 연도리	산153-2	임야	7,934		2022.12.3.	구양옥	-	구양옥	-		
151	2605	2022- 07-14	이은희	1968.8.7.	남면 연도리	산27	임야	5,157	매매	2022.10.5. ~ 2022.12.5.	임준수	-	-	-		
150	2781	2022- 08-02	7] 2], 2]	1002.7.9	남면 연도리 1963.7.2.	산472	임야	24,595	11人	2022.10.5.	김잉수	-	김잉수	-		
152	2781	08-02	김상식	1903.7.2.	남면 연도리	산397	임야	13,190	상속	2022.12.5.	김잉수	-	김잉수	_		
153	2807	2022- 08-04	김군자	1941.2.20.	남면 연도리	산91-3	임야	1,289	매매	2022.10.5. ~ 2022.12.5.	김도안 유홍숙	-	-	-		
154	2824	2022- 08-04	김정남	1964.7.5.	남면 연도리	1433	전	721	매매	2022.10.5. ~ 2022.12.5.	김종순	-	김종순	-		
155	2832	2022- 08-04	손순남	1945.5.4.	남면연 도리	105	답	747	매매	2022.10.5. ~ 2022.12.5.	정재선	_	정재선	-		
156	2833	2022- 08-04	김만옥	1947.12.23.	남면연 도리	1883	답	493 (3 40 /493)	상속	2022.10.5. ~ 2022.12.5.	김종길	1898.1.9	김종길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A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u>)</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57	2937	2022-	정봉심	1954.6.7.	남면 연도리	1864	잡종지	251	매매	2022.10.5.	김인준	-	-	_	
157	2937	08-04	경중심	1954.6.7.	남면 연도리	1865	대	165	1 PH PH	2022.12.5.	김인준	-	-	-	
158	2938	2022- 08-04	김재술	1947.6.4.	남면 연도리	1298	전	420	매매	2022.10.5. ~ 2022.12.5.	김태헌	-	김태헌	-	
159	2939	2022- 08-04	이용철	1968.8.28.	남면 연도리	897	대	228	메메	2022.10.5. ~ 2022.12.5.	이치욱	-	이치욱	-	
160	2471	2022- 06-21	박근자	1959.12.1.	남면 두라리	59	전	126	메메	2022.10.5. ~ 2022.12.5.	김본성안	-	김본성안	_	
161	2524	2022- 06-23	김건호	1975.11.8.	남면 두라리	62	대	595	상속	2022.10.5. ~ 2022.12.5.	김상국	-	김상국	_	
162	2593	2022- 07-14	김근평	1960.8.13.	남면 두라리	310	답	142	상속	2022.10.5. ~ 2022.12.5.	김광선	-	_	_	
163	2717	2022- 07-30	김근평	1960.8.13.	남면 두라리	163	임야	1,094	상속	2022.10.5. ~ 2022.12.5.	김광선	-	_	-	
164	2815	2022- 08-04	김재연	1969.11.26.	남면 두라리	482	전	522	메메	2022.10.5. ~ 2022.12.5.	김사협	-	김사협	_	
165	2846	2022- 08-04	박근	1968.6.10.	남면 두라리	30-7	임야	2,083	증여	2022.10.5. ~ 2022.12.5.	박기삼	-	_	_	
166	2847	2022- 08-04	박근	1968.6.10.	남면 두라리	55-6	전	235	매매	2022.10.5. ~ 2022.12.5.	조부언	-	조부언	-	
167	2848	2022- 08-04	박근	1968.6.10.	남면 두라리	57-1	전	955	매매	2022.10.5. ~ 2022.12.5.	조부언	-	조부언	-	
168	2602	2022- 07-14	김영숙	1956.9.13.	남면 화태리	산125	임야	1,983	매매	2022.10.5. ~ 2022.12.5.	박경수	-	-	-	

연	접수	접수	신 청 '	રો	부동산 표				.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업	<u> </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69	2606	2022- 07-14	박채민	1948.4.8.	남면 화태리	444-59	전	3,585 (1/4)	상속	2022.10.5. ~ 2022.12.5.	박소동	-	박소동	-	
					남면 화태리	18	전	494		2222 12 5	김태화	-	김태화	_	
170	2857	2022- 08-04	김복만	1954.2.2.	남면 화태리	18-5	전	938	상속	2022.10.5. ~ 2022.12.5.	김태화	-	김태화	_	
					남면 화태리	18-6	전	145		2022.12.3.	김태화	-	김태화	_	
171	2861	2022- 08-04	박용군	1956.5.1.	남면 화태리	136-6	전	166	증여	2022.10.5. ~ 2022.12.5.	박종남	1925.2.17	박종남	_	
172	2906	2022- 08-04	김광조	1941.11.6.	남면 화태리	산93-3	임야	1,289	상속	2022.10.5. ~ 2022.12.5.	김정규	-	김정규	-	
173	2866	2022- 08-04	강미란	1968.12.17.	남면 횡간리	45	전	942	매매	2022.10.5. ~ 2022.12.5.	산촌기선	-	산촌기선	-	
174	2578	2022- 07-12	김보석	1948.4.19.	화정면 상화리	15	전	440	매매	2022.10.5. ~ 2022.12.5.	김광용	1936.1.25	김광용	-	
175	2245	2022- 04-17	김수빈	1944.2.26.	화정면 낭도리	1333-19	전	251	매매	2022.10.5. ~ 2022.12.5.	김봉규외6	-	김봉규외6	-	
					화정면 낭도리	산126	임야	793		2000 10 5	정영수	-	-	_	
176	2478	2022- 06-21	정용식	1969.12.17.	화정면 낭도리	산126-2	임야	397	증여	2022.10.5. ~ 2022.12.5.	정영수	-	-	_	
					화정면 낭도리	733-2	전	873		2022.12.3.	정영수	-	-	-	
177	2479	2022- 06-21	정용식	1969.12.17.	화정면 낭도리	733	전	641 (542 /641)	증여	2022.10.5. ~ 2022.12.5.	정두옥	-	정두옥	-	
178	2480	2022- 06-21	정용식	1969.12.17.	화정면 낭도리	1238	전	119	증여	2022.10.5. ~ 2022.12.5.	정두옥	-	정두옥	-	

연	접수	접수	신 청 '	રો	부동산 표	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2]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79	2481	2022- 06-21	정용식	1969.12.17.	화정면 낭도리	1362-10	전	592	매매	2022.10.5. ~ 2022.12.5.	강순익	-	강순익	-	
180	2654	2022- 07-21	김익준	1963.10.25.	삼산면 거문리	106-17	대	149	상속	2022.10.5. ~ 2022.12.5.	강광림	1908.6.2	강광림	-	
					삼산면 거문리	산2-46	임야	5,455		0000 10 5	감선태당	-	감산택태당	_	
181	2655	2022- 07-21	김은석	1965.5.11.	삼산면 거문리	산2-48	임야	298	상속	2022.10.5. ~ 2022.12.5.	감선태당	-	감년태당	_	
					삼산면 거문리	산2-50	임야	298		2022.12.3.	감선태당	-	감선태당	_	
182	2720	2022- 07-30	이경학	1952.4.22.	삼산면 거문리	21	전	1,058	매매	2022.10.5. ~ 2022.12.5.	이만손	-	이만손	-	
183	2656	2022- 07-21	김은석	1965.5.11.	삼산면 덕촌리	산172-3 58	임야	1,488	상속	2022.10.5. ~ 2022.12.5.	간택탕	-	감탁탕	_	
184	2587	2022- 07-12	남주완	1964.11.10.	삼산면 서도리	827-2	대	146	매매	2022.10.5. ~ 2022.12.5.	김장만	1925.1.25	김장만	_	
185	2653	2022- 07-21	김갑일	1961.11.17.	삼산면 서도리	산34-35	임야	2,479	상속	2022.10.5. ~ 2022.12.5.	김해형준	-	김해형준	-	
186	2657	2022- 07-21	공수환	1962.7.1.	삼산면 서도리	690	대	188	매매	2022.10.5. ~ 2022.12.5.	신창우	-	신창우	-	
187	2658	2022- 07-21	김철기	1968.8.17.	삼산면 서도리	산34-52	임야	2,975	상속	2022.10.5. ~ 2022.12.5.	초천찬옥	-	초천찬옥	_	
188	2719	2022- 07-30	서도리 사마을회	3636-03492	삼산면 서도리	75-3	대	334	증여	2022.10.5. ~ 2022.12.5.	강의삼 최덕곤	-	강의삼 최덕곤	_	
189	2729	2022- 07-30	김영식	1960.2.7.	삼산면 서도리	743	답	314	상속	2022.10.5. ~ 2022.12.5.	김화진	-	-	-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드시			.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u>1</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190	2730	2022- 07-30	김영식	1961.2.7.	삼산면 서도리	산214	임야	49,686	메메	2022.10.5. ~ 2022.12.5.	김재익	-	_	-	
191	2731	2022- 07-30	김영식	1961.2.7.	삼산면 서도리	1063	전	1,256	매매	2022.10.5. ~ 2022.12.5.	박정선	-	-	-	
192	2732	2022- 07-30	김영식	1961.2.7.	삼산면 서도리	1085	전	896	매매	2022.10.5. ~ 2022.12.5.	소도청길	-	소도청길	-	
193	2733	2022- 07-30	김덕열	1971.2.27.	삼산면 서도리	산167-2 78	임야	2,281	증여	2022.10.5. ~ 2022.12.5.	김본우보	-	김본우보	-	
194	2741	2022- 07-30	손석화	1969.2.19.	삼산면 서도리	759	전	159	매매	2022.10.5. ~ 2022.12.5.	김재윤	-	_	-	
195	2743	2022- 07-30	남우현	1949.1.18.	삼산면 서도리	501	전	704	상속	2022.10.5. ~ 2022.12.5.	남상택	-	남상택	-	
					삼산면 서도리	176	전	430		0000 10 5	이경률	-	-	_	
196	2825	2022- 08-04	손경숙	1965.10.16.	삼산면 서도리	464	전	334	매매	2022.10.5. ~ 2022.12.5.	이경률	_	-	-	
					삼산면 서도리	1133	전	787		2022.12.3.	이경률	-	-	-	
197	2826	2022- 08-04	손경숙	1965.10.16.	삼산면 서도리	산34-56	임야	2,579	매매	2022.10.5. ~ 2022.12.5.	이태암	1909.10.17	이태암	-	
198	2827	2022- 08-04	손경숙	1965.10.16.	삼산면 서도리	1170-2	전	588	메메	2022.10.5. ~ 2022.12.5.	이영빈	-	이영빈	-	
199	2836	2022- 08-04	김영식	1961.2.7.	삼산면 서도리	726	전	1,167	상속	2022.10.5. ~ 2022.12.5.	김화진	_	_	_	
200	2900	2022- 08-04	안영명	1964.5.17.	삼산면 서도리	산34-51	임야	3,074	상속	2022.10.5. ~ 2022.12.5.	안전양순	1903.9.12.	안전양순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A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u>)</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201	2901	2022- 08-04	안영명	1964.5.17.	삼산면 서도리	148	전	416	매매	2022.10.5. ~ 2022.12.5.	최채길	-	최채길	-	
202	2700	2022- 07-27	김옥자	1954.11.14.	삼산면 동도리	1169	대	159	매매	2022.10.5. ~ 2022.12.5.	박반용	-	박반용	-	
					삼산면 동도리	1409	전	311		2022 12 5	김권옥	-	김권옥	_	
203	2701	2022- 07-27	김옥자	1954.11.14.	삼산면 동도리	1445	전	585	메메	2022.10.5. ~ 2022.12.5.	김권옥	-	김권옥	_	
					삼산면 동도리	1429	전	132		2022.12.5.	김권옥	-	김권옥	-	
					삼산면 동도리	70	전	202			김덕천	-	-	-	
					삼산면 동도리	212	전	562			김덕천	-	-	-	
00.4	0700	2022-	키 스 키	1054 11 14	삼산면 동도리	252	전	298	2.1	2022.10.5.	김덕천	-	-	-	
204	2702	2022- 07-27	김옥자	1954.11.14.	삼산면 동도리	산14-4	임야	1,884	증여	2022.12.5.	김덕천	-	-	_	
					삼산면 동도리	산14-6	임야	1,488			김덕천	-	-	_	
					삼산면 동도리	산14-8	임야	1,388			김덕천	-	-	_	
205	2744	2022- 07-30	한부자	1946.3.29.	삼산면 동도리	1333	대	149	상속	2022.10.5. ~ 2022.12.5.	김촌효선	1914.3.3	김촌효선	-	
206	2131	2022- 03-21	변봉수	1962.7.14.	삼산면 초도리	산2823	전	1,179	매매	2022.10.5. ~ 2022.12.5.	김성익	-	김성익	_	
207	2501	2022- 06-23	김동철	1977.5.5.	삼산면 초도리	산278	대	298	상속	2022.10.5. ~ 2022.12.5.	김성욱	-	김성욱	_	
208	2502	2022- 06-23	양인수	1968.1.21.	삼산면 초도리	산1303	임야	1,388	상속	2022.10.5. ~ 2022.12.5.	양영삼	-	ı	-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시			.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업	<u> </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209	2503	2022- 06-23	장미랑	1971.9.10.	삼산면 초도리	산575	대	397	매매	2022.10.5. ~ 2022.12.5.	김기삼	-	-	-	
210	2504	2022- 06-23	박충복	1964.5.3.	삼산면 초도리	산2506	전	298	매매	2022.10.5. ~ 2022.12.5.	박금두	-	박금두	-	
211	2505	2022- 06-23	이복자	1944.4.15.	삼산면 초도리	산1690	대	99	매매	2022.10.5. ~ 2022.12.5.	김문화	-	김문화	-	
212	2668	2022-	황강례	1945.6.10.	삼산면 초도리	산2201-2	전	198	매매	2022.10.5.	김문국	-	-	_	
212	2000	07-27	왕강데	1945.6.10.	삼산면 초도리	산2201-1	도로	298	- ин ин	2022.12.5.	김문국	-	-	_	
213	2669	2022- 07-27	황강례	1945.6.10.	삼산면 초도리	산2184	전	1,069	상속	2022.10.5.	박정순	-	-	_	
213	2009	07-27	정성네	1945.0.10.	삼산면 초도리	산2184-1	도로	194	70 4	2022.12.5.	박정순	-	_	_	
214	2670	2022- 07-27	이방남	1943.5.10.	삼산면 초도리	산625	임야	2,479	상속	2022.10.5. ~ 2022.12.5.	강일조	-	_	-	
215	2671	2022- 07-27	김금석	1948.8.13.	삼산면 초도리	산2246	대	298	상속	2022.10.5. ~ 2022.12.5.	김흥선	-	김흥선	-	
216	2672	2022- 07-27	김인숙	1956.5.1.	삼산면 초도리	산1768-1	임야	6,744 (1/4)	상속	2022.10.5. ~ 2022.12.5.	김본복삼	-	김본복삼	-	
217	2769	2022- 08-02	김금태	1973.8.23.	삼산면 초도리	산2727	납	99	매매	2022.10.5. ~ 2022.12.5.	김치언	-	_	-	
218	2770	2022- 08-02	김금태	1973.8.23.	삼산면 초도리	산2721	답	50	메메	2022.10.5. ~ 2022.12.5.	장창민	-	-	-	
219	2771	2022- 08-02	김금태	1973.8.23.	삼산면 초도리	산2730	납	397	매매	2022.10.5. ~ 2022.12.5.	정대언	-	정대언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A			최드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업	<u>)</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취득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220	2772	2022- 08-02	김금태	1973.8.23.	삼산면 초도리	산2724	답	198	매매	2022.10.5. ~ 2022.12.5.	송강창록	-	송강창록	-	
221	2773	2022- 08-02	김금태	1973.8.23.	삼산면 초도리	산1120	임야	8,628	매매	2022.10.5. ~ 2022.12.5.	목촌초무	-	목촌초무	-	
222	2774	2022- 08-02	김금태	1973.8.23.	삼산면 초도리	산190	전	1,283	매매	2022.10.5. ~ 2022.12.5.	김촌관일	-	김촌관일	-	
					삼산면 초도리	산427	전	793		2022 12 5	강학삼	-	-	-	
223	2789	2022- 08-02	강경남	1956.10.19.	삼산면 초도리	산2770	전	298	상속	2022.10.5. ~ 2022.12.5.	강학삼	-	-	-	
					삼산면 초도리	산2930	전	99		2022.12.3.	강학삼	-	-	-	
224	2802	2022- 08-04	김복남	1954.8.5.	삼산면 초도리	산355	대	198	매매	2022.10.5. ~ 2022.12.5.	박문구	-	_	-	
225	2805	2022- 08-04	김용수	1967.8.8.	삼산면 초도리	산1641	전	595	매매	2022.10.5. ~ 2022.12.5.	김문화	-	김문화	-	
226	2806	2022- 08-04	박문식	1948.9.13.	삼산면 초도리	산2137	임야	12,099	매매	2022.10.5. ~ 2022.12.5.	김덕만	-	김덕만	-	
227	2810	2022- 08-04	이재만	1943.9.13.	삼산면 초도리	산648	임야	16,364	상속	2022.10.5. ~ 2022.12.5.	이수영	1904.9.7	이수영	-	
228	2820	2022- 08-04	이하나	1984.1.2.	삼산면 초도리	산1721	임야	12,694	증여	2022.10.5. ~ 2022.12.5.	이응실	-	이응실	-	
229	2873	2022- 08-04	박동수	1949.5.6.	삼산면 초도리	산1919-1	임야	1,161	메메	2022.10.5. ~ 2022.12.5.	김경서	-	-	-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u></u>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삼산면 초도리	산2618	전	455		0000 10 5	박정두	-	-	_	
230	2875	2022- 08-04	박정현	1963.12.24.	삼산면 초도리	산2618-1	도로	315	매매	2022.10.5. ~ 2022.12.5.	박정두	-	-	-	
					삼산면 초도리	산2618-2	전	420		2022.12.3.	박정두	-	-	_	
					삼산면 초도리	산2782	전	276		0000 10 5	박성근	_	-	_	
231	2876	2022- 08-04	박정현	1963.12.24.	삼산면 초도리	산2782-1	도로	417	매매	2022.10.5. ~ 2022.12.5.	박성근	-	-	-	
					삼산면 초도리	산2782-2	전	441		2022.12.0.	박성근	-	_	_	
232	2552	2022- 07-01	이정랑	195.10.22.	삼산면 손죽리	산1513	답	496	상속	2022.10.5. ~ 2022.12.5.	이강추	1891.7.12	이강추	_	
233	2553	2022- 07-01	송철선	1965.2.21.	삼산면 손죽리	산139	전	2,777	매매	2022.10.5. ~ 2022.12.5.	국본쌍조	-	국본쌍조	_	
234	2554	2022-	송정하	1950.2.18.	삼산면 손죽리	산1514	답	793	상속	2022.10.5.	송기화	-	-	-	
234	2334	07-01	5/8°F	1930.2.16.	삼산면 손죽리	산1657	전	397	70 4	2022.12.5.	송기화	-	_	-	
235	2558	2022- 07-12	송동진	1981.11.16.	삼산면 손죽리	산1384	전	1,488 (1/2)	상속	2022.10.5.	송몽치	1905.1.2	송몽치	-	
233	2330	07-12	중중선	1901.11.10.	삼산면 손죽리	산1509	임야	12,298(1/2)	70 4	2022.12.5.	송몽치	1905.1.2	송몽치	-	
236	2559	2022-	송은아	1984.9.22.	삼산면 손죽리	산1384	전	1,488 (1/2)	상속	2022.10.5.	송몽치	1905.1.2	송몽치	-	
230	2003	07-12	ってい	1304.3.22.	삼산면 손죽리	산1509	임야	12,298(1/2)	o □	2022.12.5.	송몽치	1905.1.2	송몽치	_	
237	2571	2022- 07-12	이재수	1939.9.15.	삼산면 손죽리	산1596	전	595	메메	2022.10.5. ~ 2022.12.5.	이근조	-	이근조	_	
238	2572	2022- 07-12	이재수	1939.9.15.	삼산면 손죽리	산1595	전	397	매매	2022.10.5. ~ 2022.12.5.	평본지심	-	평본지심	-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EA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역	2]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239	2595	2022- 07-14	이동진	1978.12.2.	삼산면 손죽리	산1088	전	595	매매	2022.10.5. ~ 2022.12.5.	평본재두	1900.5.26	평본재두	-	
240	2619	2022- 07-21	비청ス	1976.6.3.	삼산면 손죽리	산886-1	대	99	매매	2022.10.5.	박학천	1896.6.18	박학천	_	
240	2019	07-21	박현준	1970.0.3.	삼산면 손죽리	산886-2	전	99		2022.12.5.	박학천	1896.6.18	박학천	_	
241	2620	2022-	송기용	1987.9.7.	삼산면 손죽리	산1066	전	298	상속	2022.10.5.	송태문	-	송태문	_	
241	2020	07-21	중기중	1907.9.7.	삼산면 손죽리	산1385	전	595	785	2022.12.5.	송태문	-	송태문	_	
242	2621	2022- 07-21	정남이	1954.2.5.	삼산면 손죽리	산210	대	595	매매	2022.10.5. ~ 2022.12.5.	김치규	-	-	-	
					삼산면 손죽리	산314	전	992		2222 12 5	김시언	1914.1.18	김시언	_	
243	2742	2022- 07-30	김정명	1944.3.23.	삼산면 손죽리	산415	전	298	매매	2022.10.5. ~ 2022.12.5.	김시언	1914.1.18	김시언	_	
					삼산면 손죽리	산420	대	595		2022.12.3.	김시언	1914.1.18	김시언	_	
244	2745	2022- 07-30	이정록	1954.3.18.	삼산면 손죽리	산1054	답	397	상속	2022.10.5. ~ 2022.12.5.	이양신	-	-	-	
245	2746	2022- 07-30	장윤희	1957.5.24.	삼산면 손죽리	산1155	대	99	매매	2022.10.5. ~ 2022.12.5.	송강엽	1928.3.18	송강엽	-	
246	2747	2022- 07-30	장윤희	1957.5.24.	삼산면 손죽리	산1153	대	99	매매	2022.10.5. ~ 2022.12.5.	장봉숙	1921.8.15	장봉숙	-	
247	2748	2022- 07-30	장윤희	1957.5.24.	삼산면 손죽리	산1158	대	198	매매	2022.10.5. ~ 2022.12.5.	송기화	-	-	-	
248	2749	2022-	장윤희	1957.5.24.	삼산면 손죽리	산1303	전	988	매매	2022.10.5.	박봉채	1920.8.29	박봉채	_	
240	2149	07-30	[78 판위	1901.0.24.	삼산면 손죽리	산1303-1	전	4	-11 -11	2022.12.5.	박봉채	1920.8.29	박봉채	_	

연	접수	접수	신 청 역	રો	부동산 표	드시			취득	공고	대장상소-	유자	등기명의연	0]	
번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원인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 일	비고
249	2750	2022- 07-30	이정택	1960.1.3.	삼산면 손죽리	산1583	전	298	메메	2022.10.5. ~ 2022.12.5.	이억암	-	_	-	
250	2751	2022- 07-30	이정택	1960.1.3.	삼산면 손죽리	산1582	전	99	매매	2022.10.5. ~ 2022.12.5.	송태봉	-	_	-	
251	2752	2022- 07-30	이정택	1960.1.3.	삼산면 손죽리	산1580	전	1,488	매매	2022.10.5. ~ 2022.12.5.	송본강원	_	송 본 강원	-	
252	2753	2022- 07-30	송정하	1950.2.18.	삼산면 손죽리	산1226	하천	99	매매	2022.10.5. ~ 2022.12.5.	김정권	1908.1.26	김정권	-	
253	2754	2022- 07-30	송정하	1950.2.18.	삼산면 손죽리	산1216	대	198	매매	2022.10.5. ~ 2022.12.5.	박길수	-	_	-	
254	2755	2022- 07-30	전호선	1963.4.30.	삼산면 손죽리	산387	임야	4,959	상속	2022.10.5. ~ 2022.12.5.	전창규	-	_	_	
255	2756	2022- 07-30	강금봉	1958.11.21.	삼산면 손죽리	산957	대	99	메메	2022.10.5. ~ 2022.12.5.	김태선	-	_	_	
256	2757	2022- 07-30	강금봉	1958.11.21.	삼산면 손죽리	산958	대	99	메메	2022.10.5. ~ 2022.12.5.	김태화	-	김태화	_	
257	2758	2022- 07-30	이창영	1970.2.12.	삼산면 손죽리	산1368	전	793	메메	2022.10.5. ~ 2022.12.5.	이강식	-	_	-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일부 개정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10월 5일

여수시장 있 기 생

여수시 훈령 제389호

붙임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일부개정령 1부.

여수시 훈령 제389호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일부개정) 2008.03.17 훈령 제 211호 (일부개정) 2008.06.30 훈령 제 216호 (일부개정) 2010.12.20 훈령 제 252호 (일부개정) 2011.03.21 훈령 제 255호 (일부개정) 2011.12.08 훈령 제 264호 (일부개정) 2012.12.31 훈령 제275호 (일부개정) 2013.02.01 훈령 제278호 (일부개정) 2013.06.07 훈령 제284호 (일부개정) 2014.12.03 훈령 제311호

(일부개정) 2015.11.17 훈령 제324호 (일부개정) 2016.11.09 훈령 제339호 (전부개정) 2018.03.14 훈령 제351호 (전부개정) 2019.11.19 훈령 제366호 (일부개정) 2021.07.01 훈령 제380호 (일부개정) 2022.10.05 훈령 제389호

제11장 보칙

제62조(정원)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공무직 정원<개정 2021. 7. 1., 2022. 10. 5.>

<u>[멸표 1] 광</u>	<u> </u>	<개성 20	<u> 21. 7. 1.</u>					1
				식	군			-101
부서별	계	소계	가	나	다	국고보 조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총계	567	525	166	205	41	92	21	42
본청소계	307	281	95	121	16	49	0	26
시민공감담당 관	3	3	3					
공보담당관	3	3		3				
감사담당관	1	1	1					
총무과	12	9	3	3	3			3
회계과	22	19		19				3
체육지원과	18	12	3	9				6
세정과	6	6	6					
징수과	2	2	2					
민원지적과	6	6	6					
기획예산과	5	5	1	4				
지역경제과	3	3	2	1				
산업지원과	2	2	1	1				
투자박람회과	2	2	1	1				
인구일자리과	5	5	5					
정보통신과	33	33	31	2				
관광과	7	7	1	6				
문화예술과	12	8	1	7				4
교육지원과	2	2	2					
시립도서관	32	24	12	12				8
사회복지과	10	10	2			8		
노인장애인과	11	11	1	6	4			
여성가족과	47	46	3	2		41		1
기후생태과	2	2		2				
도시미화과	2	2		2				
수산경영과	3	2	1		1			1
어업생산과	4	4	1	1	2			
해양항만레저 과	3	3		3				
섬자원개발과	1	1	1					
산림과	7	7		1	6			
도시계획과	3	3	2	1				
건설과	2	2	1	1				
재난안전과	1	1		1				
도로과	6	6	1	5				
교통과	26	26	1	25				
허가민원과	3	3		3				
의회사무국	4	4	4	0	0	0	0	0
직속기관소계	118	118	27	45	3	43	0	0
보건행정과	21	21	1	19		1		
식품위생과	2	2	1	1				
건강증진과	31	31	5	10		16		
보건사업과	40	40	5	9		26		

농업정책과	4	4	1	2	1			
농촌진흥과	11	11	9		2			
미래농업과	8	8	5	3				
특산품육성과	1	1		1				
사업단소계	72	62	7	34	21	0	0	10
도시재생과	3	3	2	1				
공영개발과	3	3	1	2				
도로시설관리 과	14	14	1	5	8			
공원과	33	29		25	4			4
수도행정과	2	2	2					
상수도과	11	5	1	1	3			6
하수도과	6	6			6			
사업소소계	14	8	3	4	0	0	1	6
생활자원사업 소	11	5		4			1	6
중부민원출장 소	3	3	3					
읍면동소계	52	52	30	1	1	0	20	0
돌산읍	2	2	2					
소라면	1	1	1					
화양면	1	1	1					
남면	13	13	4	1	1		7	
화정면	7	7	3				4	
삼산면	10	10	1				9	
동문동	1	1	1					
충무동	1	1	1					
광림동	1	1	1					
서강동	1	1	1					
대교동	1	1	1					
국동	1	1	1					
월호동	1	1	1					
여서동	1	1	1					
문수동	2	2	2					
미평동	1	1	1					
둔덕동	1	1	1					
만덕동	1	1	1					
쌍봉동	1	1	1					
시전동	1	1	1					
여천동	2	2	2					
주삼동	1	1	1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의부개정) 2008.03.17 훈령 제 211호 (일부개정) 2008.06.30 훈령 제 216호 (일부개정) 2010.12.20 훈령 제 252호 (일부개정) 2011.03.21 훈령 제 255호 (일부개정) 2011.12.08 훈령 제 264호 (일부개정) 2012.12.31 훈령 제275호 (일부개정) 2013.02.01 훈령 제278호 (일부개정) 2013.06.07 훈령 제284호 (일부개정) 2014.12.03 훈령 제311호 (일부개정) 2015.11.17 훈령 제324호 (일부개정) 2016.11.09 훈령 제351호 (전부개정) 2018.03.14 훈령 제351호 (전부개정) 2019.11.19 훈령 제366호 (일부개정) 2021.07.01 훈령 제3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 공무직의 채용, 보수, 복무 및 신분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조직운영의 능률성 향상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원 등 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사람을 말한다.
- 2. "기간제 근로자"란 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3. "행정실무원"이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의 행정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을 말 한다.
- 4. "환경미화원"이란 「여수시 환경미화원 취업 규칙」에 따라 채용되어 시의 청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시의 청사 및 시설 등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상시·지속적 업무"란 해당 업무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 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시와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공무직의 자격, 채용, 신분관계,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인사권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의 채용·휴직·전보·교육 및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채용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로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 중 징계에 따라 해고된 자로서 해고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6조(채용원칙) ①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공무직을 신규채용 또는 공무직 전환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 ③ 공무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④ 공무직을 채용하기 위한 필기·체력시험 등에 있어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소지자, 여수시 근무경력자 또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에 따른다.
- 제7조(신규채용 공고) 시장은 공무직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시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등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격, 채용방법 및 직종별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충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21. 7. 1.>
- 제8조(공무직 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일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환평가 및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 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전환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공무직 전환의 적정 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④ 시장은 전환대상자 중 제3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확정된 사람을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 만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전에도 공무직으 로 전환할 수 있다.
- 제9조(신원·경력 조회) 시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려는 경우 신원 및 경력에 대한 사항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공무직을 다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수습임용) ① 시장은 공무직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최종임용한다.
 - ② 시장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공무직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을 받는 기간은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장 근로계약 및 정년

- 제11조(근로계약 체결) ① 시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공무 직 시험합격자 또는 전환자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공무직 신상기록 카드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 7. 1.]
 - 2. 그 밖에 근로계약에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7. 1.]
 - ② 공무직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 등·초본
- 2. 민간인 신원진술서
- 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4. 그 밖에 가산점 근거자료 등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 제12조(근로계약 해지) ① 시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나이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 3. 징계에 따라 해고하려는 경우
 - 4. 제9조에 따른 신원·경력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시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직제와 정원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 2. 예산이 감소하거나 채용사유가 소멸된 경우
 - 3. 본인이 의원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 4.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5. 그 밖에 역량부족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제13조(해고의 예고) ① 시장은 공무직을 해고하려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당해 공무직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습 중인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직에게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정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 에서 정한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되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고용계약 시 정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직이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이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다만, 청원경찰인 공무직은 「청원경찰법」제10조의6에 따른다.

제4장 복무

- 제15조(복무관리) ① 공무직의 복무를 관리하는 자는 해당 공무직이 배치된 부서의 장(이하 "소속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공무직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③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무직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상황이 기재된 시간외 근무기록부를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6조(청렴의 의무)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 2(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직무 외의 영리행위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1. 19.>
- 제17조(성실의 의무) 공무직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18조(복종의 의무) 공무직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9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직은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친절·공정) 공무직은 시민과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

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21조(비밀엄수) 공무직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품위유지) 공무직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근무시간) 공무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출장) ① 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여수 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휴일) ① 공무직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② 시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날에는 공무직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제26조(연차 유급휴가) 시장은 공무직에게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휴가 2회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7, 1.>
- 제27조(경조사 휴가) 시장은 공무직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1. 7. 1.>
- 제28조(공가) 시장은 공무직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 제29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직이 개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차 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직이 7일 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
 - ③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통원치료확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5장 징계

- 제30조(징계사유) ① 시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야 한다.
 - 1. 시의 자치법규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 4.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
 - 5. 중요문서의 내용을 변조 또는 파기한 경우
 -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7.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 8. 그 밖에 시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직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2조(징계의 효력) ①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한다.
 - ③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에서 감한다.
 - ④ 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 제33조(징계위원회)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무직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 1. 인사업무 담당국장
 - 2. 인사업무 담당과장
 - 3. 5급 이상 공무원 2명
 - 4. 여수시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공무직 대표 1명
 - ③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징계의결 요청) ① 소속 부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하 "징계요구 권자"라 한다)은 공무직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 ② 징계요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요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징계요구 양정(量定)

- 2. 징계 심의 시 참고할 사항
- 제35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에 회부된 공무직(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1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징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징계대상자등"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② 징계대상자등은 특정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은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받고 서면심사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징계대상자등은 정당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징계대상자등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등이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구속, 장기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 우 징계대상자등이 서면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진술 없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⑥ 징계대상자등이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징계대상자 등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제36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등에게 징계의결 요구 내용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징계대상자등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요구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7조(심의·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해야 한다.
 - 1. 입증자료의 적부
 - 2.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및 공적
 - 3. 비위동기 및 반성태도
 - 4.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 5. 그 밖에 정상 참작할 사항 등
 -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의결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당해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8조(징계처분) ① 시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와 별지 제1 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동일한 사유로 공무원과 공무직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직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양정과 동일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 ③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39조(재심청구) ① 징계요구권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40조(경고·주의) 시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공무직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시 문서에 기록하고 이를 당해 공무직에게 교부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41조(평정시기)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는 6개월 마다 년 2회 공무직에 대한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직이 수습근무 중이거나 최초 근무시작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평정자) 공무직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직의 직근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3조(평정방법) 제42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실성, 친절성 및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되, 근무평정 시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7장 권익신장

- 제44조(포상)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45조(양성평등) ① 시장은 공무직의 모집, 채용, 승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에 있어서 양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 제46조(차별금지) ① 공무직의 채용·정년·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여성 공무직을 채용함에 있어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의 채용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②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 자 등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공무직의 권익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직을 대상으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당해 교육을 위탁하거나 학습관리 시스 템(사이버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8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제8장 휴직

- 제49조(휴직사유 및 기간) 시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1 년 이내
 - 2.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기 가
 -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된 경우 : 1심 확정판결까지의 기간
 - 4.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 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
- 제50조(급여) 휴직 중인 공무직(이하 "휴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4대 중증질환(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으로 제49조제1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 제51조(당연휴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확실한 경우
- 제52조(육아휴직) 공무직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 제53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거주지·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 게 알려야 한다.

- 제54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직원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25일 이상이 지나도록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직자의 복직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그 후 5일 이내에도 복직원 제출 등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휴직기간 중에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공무직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만료하고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직명령을 받은 휴직자는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한다.

제9장 보수 및 퇴직급여

- 제55조(원칙)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결근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③ 공무직이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신규채용, 승급, 전보, 퇴직 또는 그 밖의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제56조(지급시기) 공무직의 보수는 이전 달 급여지급일로부터 해당 월 급여지급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액수 총액을 해당 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57조(공제) 공무직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1. 각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중 공무직 부담액
- 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제58조(퇴직급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 무원 연금에 가입된 공무직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목 개정 2019. 11. 19.>

제5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 다)를 해서는 안 된다.

제60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59조에 따라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 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

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 신설 2019. 11. 19.]

-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시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19. 11. 19.]

제11장 보칙 <장 신설 2019. 11. 19.> 제62조(정원)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9조에서 이동 2019. 11. 19.]

- 제63조(신분증) ① 시장은 공무직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은 이를 청사 내 또는 청사 외에서 근무 중 항상 휴대·패용해야 한다.
 - ② 공무직이 휴직 중이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신분증을 휴직일 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반납해야 한다.

[제60조에서 이동 2019. 11. 19.]

- 제64조(인사기록카드) 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 로관계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 다.
 - ② 시장은 공무직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이를 발급한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1조에서 이동 2019. 11. 19.]

- 제65조(다른 법령 준용) ① 근로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② 청원경찰인 공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및 「여수시 청원경찰 근무 및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에서 이동 2019. 11. 19.]

부 칙(2018.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도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부칙(2019. 11. 19. 훈령 제366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정원<개정 2021. 7. 1., 2022. 10. 5.>

	계	직군						
부서별		소계	가	나	다	국고보 조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총계	567	525	166	205	41	92	21	42
본청소계	307	281	95	121	16	49	0	26
시민공감담당 관	3	3	3					
공보담당관	3	3		3				
감사담당관	1	1	1					
총무과	12	9	3	3	3			3
회계과	22	19		19				3
체육지원과	18	12	3	9				6
세정과	6	6	6					
징수과	2	2	2					
민원지적과	6	6	6					
기획예산과	5	5	1	4				
지역경제과	3	3	2	1				
산업지원과	2	2	1	1				
투자박람회과	2	2	1	1				
인구일자리과	5	5	5	_				
정보통신과	33	33	31	2				
 관광과	7	7	1	6				
문화예술과	12	8	1	7				4
교육지원과	2	2	2					
시립도서관	32	24	12	12				8
사회복지과	10	10	2			8		
노인장애인과	11	11	1	6	4			
여성가족과	47	46	3	2		41		1
기후생태과	2	2		2		11		<u> </u>
도시미화과	2	2		2				
수산경영과	3	2	1	2	1			1
어업생산과	4	4	1	1	2			
해양항만레저 과	3	3	1	3				
성자원개발과	1	1	1					
산림과	7	7		1	6			
도시계획과	3	3	2	1				
건설과	2	2	1	1				
재난안전과	1	1		1	1			1
도로과	6	6	1	5				
교통과	26	26	1	25				
허가민원과	3	3		3				
의회사무국	4	4	4	0	0	0	0	0
직속기관소계	118	118	27	45	3	43	0	0
보건행정과	21	21	1	19		1		
식품위생과	2	2	1	1				
건강증진과	31	31	5	10		16		

보건사업과	40	40	5	9	1	26	1	
농업정책과	4	4	1	2	1			
농촌진흥과	11	11	9		2			
미래농업과	8	8	5	3				
특산품육성과	1	1		1				
사업단소계	72	62	7	34	21	0	0	10
도시재생과	3	3	2	1				
공영개발과	3	3	1	2				
도로시설관리 과	14	14	1	5	8			
공원과	33	29		25	4			4
수도행정과	2	2	2					
상수도과	11	5	1	1	3			6
하수도과	6	6			6			
사업소소계	14	8	3	4	0	0	1	6
생활자원사업 소	11	5		4			1	6
중부민원출장 소	3	3	3					
읍면동소계	52	52	30	1	1	0	20	0
돌산읍	2	2	2					
소라면	1	1	1					
화양면	1	1	1					
남면	13	13	4	1	1		7	
화정면	7	7	3				4	
삼산면	10	10	1				9	
동문동	1	1	1					
충무동	1	1	1					
광림동	1	1	1					
서강동	1	1	1					
대교동	1	1	1					
국동	1	1	1					
월호동	1	1	1					
여서동	1	1	1					
문수동	2	2	2					
미평동	1	1	1					
둔덕동	1	1	1					
만덕동	1	1	1					
쌍봉동	1	1	1					
시전동	1	1	1					
여천동	2	2	2					
주삼동	1	1	1					